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주택국)

김 포 시

목 차

1. 도시계획과	1
2. 도시관리과	27
3. 주택과	71
4. 건축과	103
5. 토지정보과	125
6. 종합허가과	171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도시계획위원회(위원:25명)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23명) 운영		
사업목적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로 법적사항 준수 및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73조 제73조(수당 및 여비) ①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320	43,280	33,280	10,000	35,840	2,5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320	43,280	33,280	10,000	35,840	2,5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840	
도시계획 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1분과)	80,000원*8명*20회 = 12,800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본회의)	80,000원*15명*8회 = 9,60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	80,000원*14명*2회 = 2,240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속기)수당	200,000원*2시간*28회 = 11,200	

□ 예산요구 사유

- 50만 대도시 진입과 관련하여 道 위임사무 증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도가 높아짐
- 도시계획위원회(1분과, 본회의) 및 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4인 추가위촉('23년 3월) 및 운영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개최(개발행위) : 월 2회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개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 월 1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연 4~6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위원회 개최 39회
2022	- 위원회 개최 39회
2023	- 위원회 개최 25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6,160	24,160	-	2,000	
2022	30,320	25,200	-	5,230	
2023	43,280	23,570		19,710	10.31.기준 집행현황

※ 2023.12.31.까지 집행잔액 19,710천원 중 12,210천원 집행, 7,500천원 감액 예정(2회추경)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최성기	담당자	행정7급 안선영 행정8급 손소민	전화	2357 2536
-----	-------	------------	-----	----------------------	----	--------------

도시계획 수립 지원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공고료, 자료제본 및 도서구입, 업무배상공제 가입 등		
사업목적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관련 공고 및 열람공고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송관련 보험료 지급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2,480	26,480	26,480	0	20,080	-6,4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2,480	26,480	26,480		20,080	-6,4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80	
도시계획 수립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료	7,500,000원*2건 =	15,000
		·도시계획관련 도서구입	200,000원 =	200
		·도시계획관련 자료제본 및 물품구입	100,000원*36회 =	3,600
	201-02 공공운영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소송 관련 보험료	160,000원*8명 =	1,28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료 지출
- 도시계획 관련 자료 제본 및 도서 구입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송 관련 보험료 지급
 - 2024년도 업무배상공제 공제회비 인상률(10%)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 건수 감소(2023년 3건 → 2024년 2건 예정)로 인한 공고료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료 지출(수시) : 2건(건당 지방지 인터넷 포함 2곳)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등 제본, 도시계획 관련 정보 도서 및 물품 등 구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공고 26,460천원 -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료제본, 도서 및 물품 등 3,760천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 1,009천원
2022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고 16,060천원 - 자료 제본, 물품 등 2,564천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 1,153천원
2023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 13,015천원 - 자료제본, 도서 등 1,314천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 1,009천원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7,910	31,229	-	6,681	
2022	22,480	19,777	-	2,703	
2023	26,480	15,338		11,142	10. 31.기준 집행현황

※ 2023.12.31.까지 집행잔액 11,142천원 중 8,871천원 집행, 2,271천원 감액 예정(2회추경)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박희락	전화	2325
-----	-------	------------	-----	----------	----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규모	풍곡, 고란태, 소준/대준, 은행정, 평리, 368,847㎡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변경 불허 등에 따른 지속민원 해소를 위한 재정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시행령,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 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80,000	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80,000	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01-01 시설비	·인건비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사,보조원 1식)*노무비 94.93명*190,000원 = 18,038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8,037,517원*110% = 19,841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18,037,517원+19,841,269원]*20% = 7,576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표준품셈 1식 = 30,000		
		·부가세(10%) [18,037,517원+19,841,269원+7,575,757원]*10% = 4,545		

※ 산출근거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4장 4-1 지구단위계획 준용

□ 예산요구 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성
 - 2018년 9월 재정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12개소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 2026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실효부지 내 건축제한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으로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예산 반영
- 2024.04 : 업체선정 및 과업착수
- 2024.11 : 과업 수행
- 2024.12 : 용역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368,847㎡	본예산 요구액 (천원)	8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위치	풍곡, 고란태, 소준/대준, 은행정, 평리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9급 전류민	전화	2442
-----	-------	------------	-----	----------	----	------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관리대상 270개소,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41개소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사업목적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사 분석을 토대로 정비계획 제시, 관리대상 작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제48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제48조 제2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제3항			
·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4,000	55,000	55,000	0	5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	55,000	55,000		5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0	
김포시 장기미집행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401-01 시설비	·인건비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사,보조원 1식)*노무비] 108.74명*190,000원 = 20,66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20%) 20,661,157원*120% = 24,79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10% [20,661,157원+24,793,388원]*10% = 4,545		
		·부가세(10%) [20,661,157원+24,793,388원+4,545,454원]*10% = 5,000		

* 산출근거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3장 제6절 단계별집행계획 준용

□ 예산요구 사유

- (실효고시) 실효시기가 도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형도면고시 등 법적 절차 이행 필요
- (정비계획)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보고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관리 등 관내 미집행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 작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 물량 동일하여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예산 반영
- 2024. 0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4. 10. : 미집행시설 관리대장 작성,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자료 작성 등
- 2024. 11. : 정비계획보고서 작성(관리대장) 및 시의회 보고
- 2024.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1.0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착수 - 2021.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준공(집행금액 : 19,800천원)
	- 2021.03.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착수 - 2021.12.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준공(집행금액 : 19,800천원)
2022	- 2022.0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착수 - 2022.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준공(집행금액 : 19,800천원)
	- 2022.10.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착수 - 2022.12.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준공(집행금액 : 19,800천원)
2023	- 2023.03.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착수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과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통합하여 발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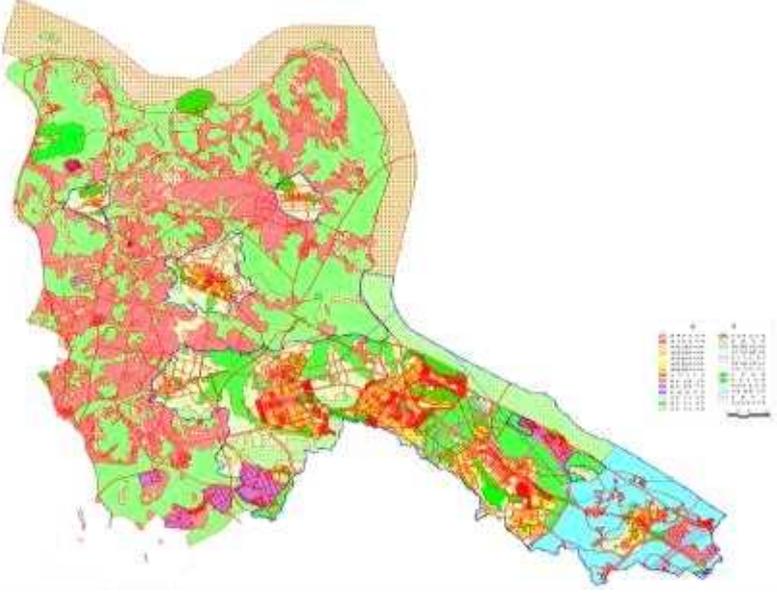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관리대장	22,000	19,800	-	2,200	
	실효고시	22,000	19,800	-	2,200	
2022	관리대장	22,000	19,800	-	2,200	
	실효고시	22,000	19,800	-	2,200	
2023	55,000		34,066	-	20,934	10. 31. 기준 집행현황

* 2023.12.31.까지 집행잔액 20,934천원 중 14,600천원 집행, 6,334천원 감액 예정(2회추경)

* 관리대장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

* 실효고시 :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용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관리대장 421개소,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41개소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	본예산 요구액 (천원)	55,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강윤주	전화	2505
-----	-------	------------	-----	----------	----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276.6km ²		
사업목적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시장 또는 군수(이하“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1,780	21,780	21,780	0	21,780	0	
국비	0	0	0			0	
도비	0	0	0			0	
시비	21,780	21,780	21,780		21,780	0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780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201-02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1,815,000원*12월 =	21,78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 유지관리의 필요성
 - 우리 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지원처리 등 표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체계 마련 필요
- 우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현황
 - UPIS 표준시스템 Ver 8.0운영중
 - HW(APP서버/DB서버) 및 SW[GIS엔진(GeoNURIS Suite) / DBMS Oracle]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 갱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 물량 동일하여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용역 발주
- 2024.02. : 용역업체 선정 및 과업착수
- 2024.03. : 과업수행
- 2024.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1.03.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 - 2021.12.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용역 준공 (집행금액: 19,602천원)
2022	- 2022.01.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 - 2022.12.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용역 준공 (집행금액: 20,691천원)
2023	- 2023.03.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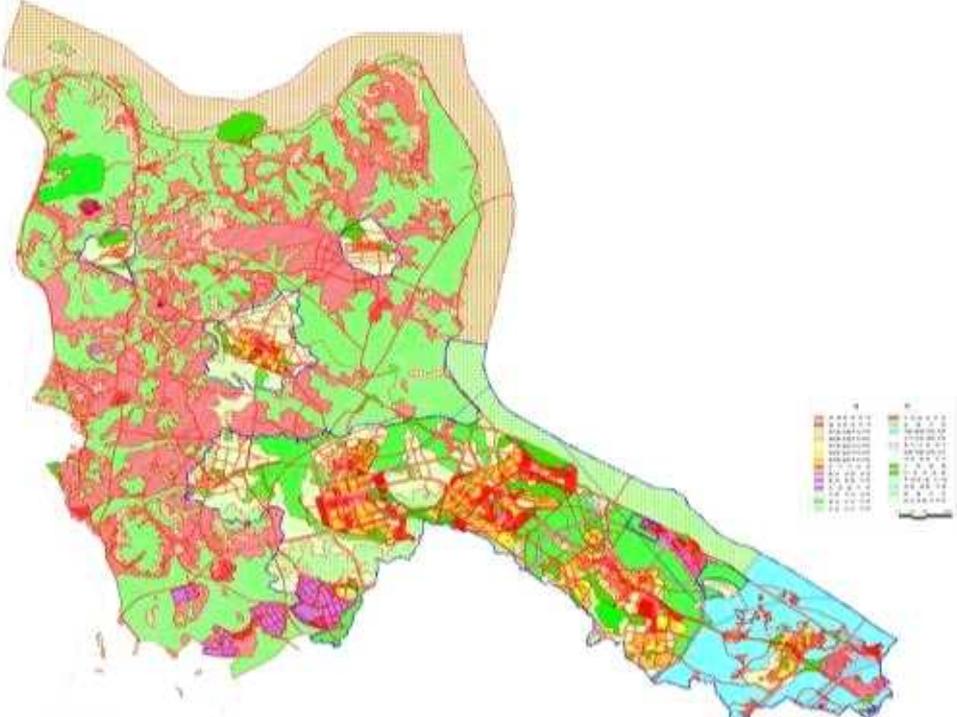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1,780	19,602	-	2,178	
2022	21,780	20,619	-	161	
2023	21,780	11,592	-	10,188	10. 31. 기준 집행현황

※ 2023.12.31.까지 집행잔액 10,188천원 중 4,968천원 집행, 5,220천원 감액 예정(2회추경)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276.6km ²	본예산 요구액 (천원)	21,78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박희락	전화	2325
-----	-------	------------	-----	----------	----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사업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규모	16.95km ²		
사업목적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경계표석·안내표지판 등 설치·유지비, 사무관리비(현수막, 인쇄비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 제5호
	법령 위임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891	5,794	5,794	0	5,794	0	
국비	4,891	5,794	5,794	0	5,794	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94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201-01 사무관리비	·복사용지(A4) 구입	25,300원*30EA =	759
		·복사용지(A3) 구입	52,000원*20EA =	1,040
		·토너(컬러) 구입	781,000원*1EA =	781
		·피복(작업화, 방한용품 등) 구입	310,000원*6EA =	1,860
		·현수막 구입	55,000원*10EA =	550
		·간이안내판 구입	20,000원*30EA =	600
		·사무용품 구입	204,000원*1EA =	204

□ 예산요구 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요구(불법행위 점검 관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 물량 동일하여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공고
- 2024.03. : 현수막 및 안내판 구입
- 2024.06. : GB관리시설 예초작업
- 2024.09. : 사무용품 구입
- 2024.11. : 방한용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복사용지, 토너, 현수막 등 관리비 지출
2022	- 현수막, 안내판, 복사용지 등 관리비 지출
2023	- 현수막, 안내판, 사무용품 등 관리비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583	5,583	-	-	
2022	4,891	4,891	-	-	
2023	5,794	2,897	-	2,89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장 이금석	담당자	시설9급 유희수	전화	2398
-----	-------	------------	-----	----------	----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20호외2개]개설공사

사업기간	2024.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풍굴로94 일원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L=901m, B=8~10m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940,000	607,950	515,950	92,000	170,000	-345,950	
국비	970,000	303,975	257,975	46,000	136,000	-121,975	
도비		0				0	
시비	970,000	303,975	257,975	46,000	34,000	-223,9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1-01 시설비	·풍곡도시계획도로(소1-20호외2개) 실시설계	1식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025(2023.9.11.)호 및 경기도 지역정책과-10728(2023.9.14.)호에 의거 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국고보조금 확정통지(국비 136백만원)
- 본 사업의 국비 매칭비율은 국비80:시비20으로써, 국비 확정분에 대한 시비 확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025(2023.9.11.)호 및 경기도 지역정책과-10728(2023.9.14.)호에 의거 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국고보조금 확정통지(국비 136백만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3.~2022.10 : 풍곡도시계획도로(1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보상 및 공사
- 2021.08.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20호,소2-60호,소2-61호) (3,4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2.10.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06.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실시계획인가
- 2023.09.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보상계획공고
- 2023.11.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손실보상협의
- 2024.01.~2025.12.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준공
- 2024.03.~2024.12. : 풍곡도시계획도로(3,4구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실시계획 인가 등)
- 2025.03.~2025.12. : 풍곡도시계획도로(3,4구간) 손실보상협의
- 2026.03.~2026.12. : 풍곡도시계획도로(3,4구간)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8,430,950	5,300,950	170,000	170,000	0	2,960,000	
공 정 별	설계비	300,000	130,000	170,000			
	보상비	5,047,000	3,787,000	0		1,260,000	
	공사비	3,083,950	1,383,950	0		1,7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22	- 풍곡도시계획도로(소2-105호,소2-106호,소1-106호) 개설공사 [1구간] 준공
2023	- 풍곡도시계획도로(소2-105호,소2-106호,소1-106호) 개설공사 [2구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619,356	1,183,974	1,135,144	300,238	
2022	3,075,144	1,837,019	1,238,125	-	
2023	1,846,075	254,994	-	1,591,08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L=901m, B=8~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풍골로 94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장 이금석	담당자	시설7급 나종민	전화	2451
-----	-------	------------	-----	----------	----	------

도시경관 관리

사업기간	2024. 04. ~ 2024. 05.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공무원 등		
사업목적	도시경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실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해당조례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600	2,400	2,400	0	2,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00	2,400	2400		2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도시경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강사료(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준) ·교육책자 등 제작	500,000원*2회 = 1,000 14,000원*100부 = 1,4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디자인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디자인 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 마련
-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기술 함양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의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2024. 04. ~ : 교육계획 수립
- 2024. 05. ~ : 교육책자 제작 및 교육 실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일시 : 2021. 11. 16.(화) 13:30 ~ 18:00(1,2차), 장소 : 본관 3층 참여실, 교육실시 결과 : 100명 참석
2022	일시 : 2022. 11. 08.(화) 13:30 ~ 18:00(1,2차), 장소 : 평생학습관 대강당, 교육실시 결과 : 78명 참석
2023	일시 : 2023. 6. 26.(월) 16:00 ~ 18:00, 장소 : 본관 3층 참여실, 교육실시 결과 : 85명 참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600	8,600	-	0	
2022	2,600	1,961	-	639	
2023	2,400	1,270	-	1,1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7급 문유진	전화	2356
-----	-------	------------	-----	----------	----	------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내 경관, 공동, 공공디자인 위원회 주요 심의 대상		
사업목적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운영을 통한 도시디자인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령 구분	법령 위임규정	경관법	제29조 제1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령 구분	해당조례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김포시 경관 조례	제31조 제1항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6조 제1항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5,840	32,800	32,800	0	25,000	-7,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840	32,800	32,800		25,000	-7,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통		합 계	25,000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등	80,000원*14명*10회 = 11,200 80,000원* 7명*10회 = 5,600 80,000원*10명*10회 = 8,000 10,000원*20회 = 200	

□ 예산요구 사유

- 관련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공동심의 또는 공공디자인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의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판단하여 일부 감하였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12. : 각 위원회 개최 약 10회(경관위원회 : 연 10회, : 공동위원회 연 10회, 공공디자인위원회 : 연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 지자체, 공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공공디자인위원회 주요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의 심의대상 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단순 시설물 제외)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경관위원회 개최 13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6회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11회
2022	- 경관위원회 개최 8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5회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8회
2023	- 경관위원회 개최 7회 -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4회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6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0,640	9,440	-	1,200	
2022	15,840	10,040	-	5,800	
2023	32,800	11,260		21,54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7급 문유진 시설8급 정은혜	전화	2356 2380
-----	-------	------------	-----	----------------------	----	--------------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사업위치	감정동 475-4번지 일원
사업규모	북변4사거리~김포간선14호 교량까지 농수로 인근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길이 670m, 폭 5m)		
사업목적	시책으로 조성된 농수로 산책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관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관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000	20,000	20,000	0	5,000	-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20,000	20,000		5,000	-1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통		합 계	5,000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401-01 시설비	·시설물 유지 및 보수(테크, 타일, 휴게시설물 등)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는 시책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 조성이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추가 시설물 조성보다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일부 감하였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11. :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사업 대상지 확정
- 2012. 12. :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 완료
- 2015. ~ 2023. : 매년 유지보수 실시
- 2024. 01. ~ 12. : 사업계획 수립, 유지보수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방호벽 코킹작업 및 페인트 도색, 타일 보수, 데크 시공, 휴게시설물 설치 등
2022	- 타일 보수, 현무암 판석포장, 산책로 평탄화, 벽체 크랙보수, 등 의자 설치, 루버 설치 등
2023	- 타일보수, 방호벽면 보수, 산책로 보수, LED램프 교체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000	19,932	-	68	
2022	10,000	9,995	-	5	
2023	20,000	9,493		10,507	10. 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L=670m, B=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
부기명 (세부사업)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위치	감정동 475-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8급 정은혜	전화	2380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관리과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기간	2024. 01. 01. ~ 2027.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갈산리 527-1 일원	대표자	
사업목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집수리, 복지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 반복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108조
	<p>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8조(자금지원)</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해당조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170,000	170,000	
국비		0	0	0	110,000	110,000	
도비		0	0	0	18,000	18,000	
시비		0	0	0	42,000	42,000	
자부담		0	0	0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1-01 시설비	·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 1,700,000천원(총사업비) × 10% = 170,000천원 ※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 기본계획수립 절차 :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안) 적정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기본계획 수립(확정) 및 고시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202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2022										
2023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현장사진 또는 예시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38,554.9m ²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7-1 일원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9급 김성곤	전화	5455
-----	-------	------------	-----	----------	----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기간	2021. 08. 01. ~ 2025. 08.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산 15-2번지 일원
사업규모	주제공원(근린공원 14,965㎡ / 1개소, 총 46,277㎡)		
사업목적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우근린공원 조성으로 원도심의 휴식공간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227,000	0	0	0	469,000	469,000	
국비	100,000	0			469,000	469,000	
도비	342,000	0				0	
시비	4,785,000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9,000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401-01 시설비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비 국비(10%) 미교부액 : 469,000천원 - 총사업비 : 5,696,000천원 - 지방비 기 확보액 : 5,127,000천원 (90%)	= 469,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2년도 미교부된 국비 469백만원 교부 신청(국비 외 지방비 기편성 완료(2022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이행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2018.2. (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8. :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착수(~2022. 11.)
- 2021. 10. : 사우근린공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착수(~2022. 12.)
- 2021. 12.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착수(~2022. 11.)
- 2023. 03.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1. : 실시계획인가
- 2023. 12. : 토지보상 착수
- 2024. 01. :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 2024. 10. ~ 2025. 12.: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5,696,000	5,227,000	469,000	469,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2,976,000	2,976,000	0			
	공사비	1,500,000	1,031,000	469,000	469,000		
	감리비	400,000	400,000	0			
	부대비	20,000	2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2022	○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2023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00,000	148,794	351,206		
2022	5,078,206	138,330	4,869,173	70,703 (국비반납)	
2023	4,869,173	175,13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근린공원 14,965㎡(총 면적 46,277㎡)	본예산 요구액 (천원)	469,000
부기명 (세부사업)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위치	사우동 산 15-2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6급	황원범	전화	5503
-----	-------	--------	-----	-----	------	-----	----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기간	2019. 10.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북변중로 65번길 4-6번지 일원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12,766㎡ [행정복지센터(지하1층/지상3층), 어울림센터(지하1층/지상5층)]		
사업목적	늘어나는 김포본동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005,000	17,030,000	17,030,000	0	500,000	-16,530,000	
국비	1,737,000	0				0	
도비		0			500,000	500,000	
시비	2,268,000	17,030,000	17,030,000			-17,0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미교부액 : 500,000천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생활SOC사업 선정) 총사업비(매칭) : 4,475,000천원 지방비 기 확보액 : 2,238,000천원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보조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보조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2021.5. (중앙)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9.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 2021.06.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 2021.11. : 설계공모
- 202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07. :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착수
- 2023.06.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 2023.0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3.10. : 실시계획인가
- 2023.11.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
- 2023.12. : 보상착수
- 2024.06. ~ 2026.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53,000,000	21,035,000	5,500,000	500,000	5,000,000	26,465,000	
공 정 별	설계비	2,054,000	2,054,000	0			
	보상비	17,000,000	17,000,000	0			
	공사비	30,000,000	1,921,000	5,000,000	500,000	4,500,000	23,079,000
	감리비	1,146,000		500,000		500,000	646,000
	부대비	2,800,000	60,000	0			2,7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중앙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착수
2023	재정비추진계획(북변6구역) 변경 결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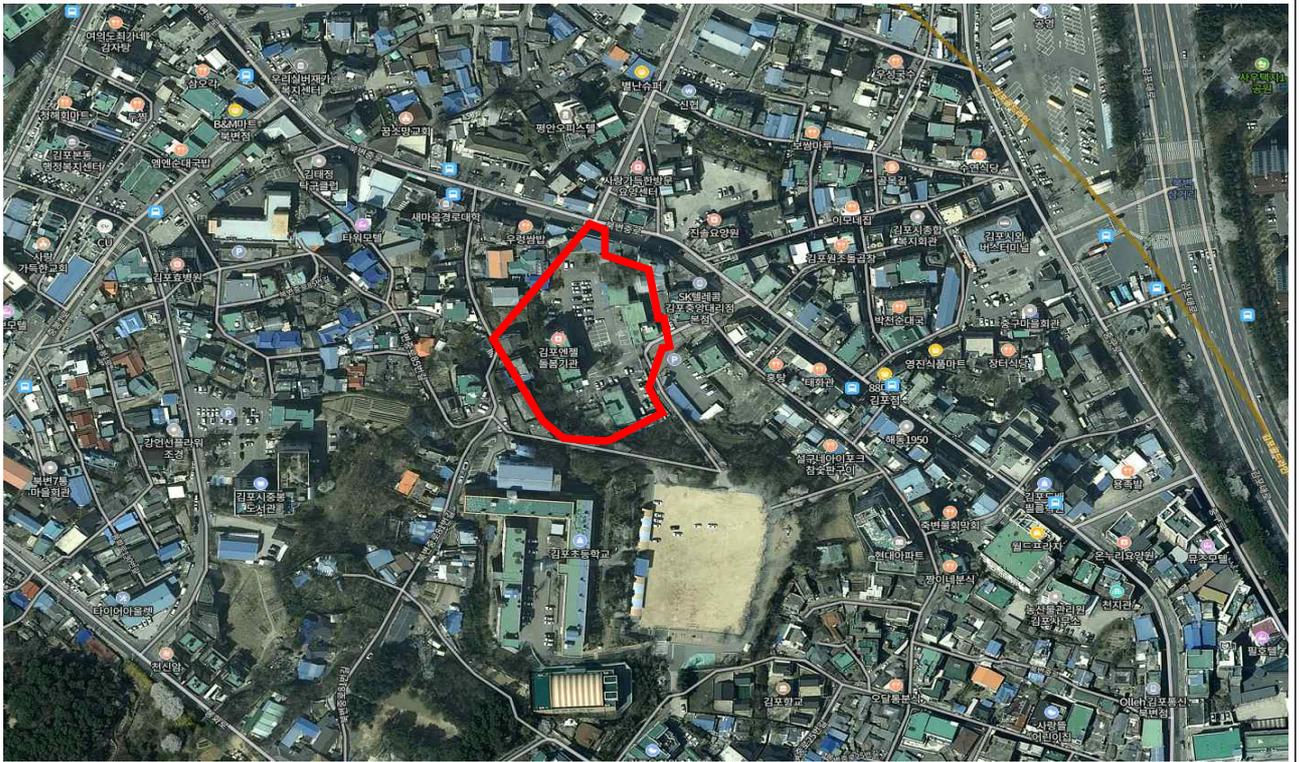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771,000	-	2,771,000	-	
2022	4,005,000	1,802,984	2,922,016	-	
2023	19,952,016	41,07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연면적 12,766㎡ (행정복지센터 지하1/지상3) (어울림센터 지하1/지상5)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북변중로 65번길 4-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7급 김형준	전화	5624
-----	-------	--------	-----	-----	----------	----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1개소(별관 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목적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반 형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
<p>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5,393	65,213	65,213	0	36,476	-28,73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5,393	65,213	65,213	0	36,476	-28,73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476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일반수용비 : 220,000원*12월 = 2,640 ·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 자문수당 : 100,000원*5명*1회 = 500 · 홍보물(기념품) 제작 : 10,000원*90개*3회 = 2,700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라니장터사랑채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 수수료 - 148,000원*12월 = 1,776 · 오라니장터사랑채 소방시설 유지보수관리 용역 수수료 - 162,000원*12월 = 1,944 		
	201-03 행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대학 운영 - 강사료 : 일반1급(2h)350,000원*1명*14회 = 4,900 - 보조강사료 : 80,000원(2h)*2명*4회 = 640 - 원고료 : A4 12면 기준 84,000원*1명*14회 = 1,176 - 자료집인쇄비 : 15,000원*60부*2회 = 1,800 - 웹자보 : 200,000원*2회 = 400 - 포스터 : 4,000원*50장*2회 = 400 - 현수막 : 55,000원*1식*28장 = 1,540 - 배너 : 50,000원*1식*2개 = 100 - 차량대여 : 800,000원*1대*2회 = 1,600 - 소모품구입비 : 3,000원*30명*6회 = 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웹자보 : 200,000원*1식*1회 = 200 - 현수막 : 55,000원*1식*15장 = 825 - 강사료 : 일반1급(2h)350,000원*1명*3회 = 1,050 - 블로그 기사 작성료 : 30,000원*5명*10회 = 1,500 - 영상제작 : 800,000원*1식*2편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 강사료 : 일반1급(2h) 350,000원*1명*4회 = 1,400 - 보조강사료 : 80,000원(2h)*2명*2회 = 320 - 현수막 : 55,000원*1식*4장 = 220 - 차량대여비 : 800,000원*1대*1회 = 8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운영 - 식비 : 15,000원*5명*1회 = 75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다과비 : 3,000원*30명*12회 = 1,080 - 견학 식비 : 8,000원*30명*6회 = 1,440 - 공유회 공연비 : 500,000원*2팀*1회 = 1,000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 식비 : 8,000원*5명*10회 = 400 - 다과비 : 3,000원*5명*10회 = 150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및 협동조합 관리 - 식비 : 8,000원*10명*10회 = 800 - 다과비 : 3,000원*10명*10회 = 3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식비 : 8,000원*5명*12회 = 480 - 다과비 : 3,000원*5명*12회 = 180 		※ 민간 인여비 지원금 기준 용

□ 예산요구 사유

-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 및 예산 마련
-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포함해 도시재생 서포터즈 교육 등 대상과 직무에 따른 차별성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한 단계별 성장지원
-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 활동가로 성장시키고 또한 도시재생사업 홍보 진행
- 주민, 활동가, 도시재생 공동체,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 활동공유회 등을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본 및 인쇄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증액
- 승강기 및 소방안전 유지관리 수수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액
-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및 행사운영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비대상	비대상	원안가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비대상	비대상	2023.4.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2024.12.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지원
- 2024. 5. ~ 2024. 6. :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 2024. 9. ~ 2024.10. :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 총 2차례 진행 - 내용 : 양촌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등 ○ 도시재생대학(기본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4.20. ~ 2021.4.29. - 장소 : 김포시 평생학습관 김포시민행복이음센터 교육실 - 수료인원 : 28명 ○ 도시재생대학(심화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10.5. ~ 2021.10.21. - 장소 : 김포시 평생학습관 김포시민행복이음센터 교육실 - 수료인원 : 20명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 총 7개소 - 보조금 :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21. 4. ~ 2021.11.(약 7개월) ○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 2021.10.1. ~ 2021.10.31. - 분야 : 김포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제안(10팀 참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김포시의미래’그리기(36팀참가) ○ 양촌읍 도시재생예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21년 5월 3일 ~ `21년 11월 30일 - 용역예산 : 금189,400,000원(금일역팔천구백사십만원) - 위 치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17-1번지 일원 - 주요내용 : (청암상가 가로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벽화 사업, 프리마켓 운영, 환경정화 캠페인, 주민해설사 등 사업지원) ○ 도시재생 활동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 12. 2 - 장소 : 양촌읍 오라니장터사랑채 - 내용 : 주민제안공모사업 결과 발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및 사진전 등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 1차례 ○ 도시재생대학(기본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6.21. ~ 2022.7.7. - 장소 : 김포시 평생학습관 김포시민행복이음센터 교육실 - 인원 : 22명 ○ 도시재생대학(심화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1.2.~11.18. - 장소 : 양촌읍 오라니장터사랑채 - 인원 : 27명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 6명 선정 - 활동기간 : 2022년 5~12월 - 활동내용 :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SNS 기사 작성 등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 총 6개소 - 보조금 : 24,000천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1.(약 7개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대학(마을축제기획자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7.12. ~ 7.28. - 장소 : 김포아트홀 세미나실 - 인원 : 29명 ○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 5명 선정 - 활동기간 : 2023년 4~12월 - 활동내용 : 도시재생 사업 홍보 및 SNS 기사 작성 등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 총 6개소 - 보조금 : 26,000천원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1.(약 7개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82,000	67,574	-	14,425	
2022	75,393	70,413	-	498	
2023	65,213	46,775	-	18,4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구준희	전화	8379
-----	-------	------------	-----	---------------	----	------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4. 01. 01. ~ 2027. 12. 31.	사업위치	갈산리 527-1 일원
사업규모	-면적: 38,554.9m ² /-인구: 143명, 34호, 42가구		
사업목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집수리, 복지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108조
	<p>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8조(자금지원)</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해당조례	-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70,000	170,000	
국비							110,000	110,000	
도비							18,000	18,000	
시비							42,000	42,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1-01 시설비	·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 1,700,000천원(총사업비) × 10% = 170,000천원 ※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 기본계획수립 절차: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안) 적정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기본계획 수립(확정) 및 고시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공모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추진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4.01. 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4. : 공모 신청
 - 2023.06. : 공모 선정
 - 2024.01. ~ 12.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25.01. ~ 12. :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26.01. ~ 2027.12. :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산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700,000	0	170,000	170,000	0	1,530,000	
공 정 별	설계비	170,000	170,000	170,000			
	보상비	350,000	0			350,000	
	공사비	1,160,000	0			1,160,000	
	감리비	0	0				
	부대비	20,000	0				2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38,554.9m ²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7-1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9급 김성곤	전화	5455
-----	-------	------------	-----	----------	----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08.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산 15-2번지 일원
사업규모	주제공원(근린공원 14,965㎡/ 1개소, 총 46,277㎡)		
사업목적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우근린공원 조성으로 원도심의 휴식공간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5,227,000	287,124	4,869,173		175,130	4,694,043	469,000	469,000	
국비	100,000	29,297					469,000	469,000	
도비	342,000	120,000	222,000		7,944	214,056			
시비	4,785,000	137,827	4,647,173		167,186	4,479,98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469,000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401-01 시설비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비 국비(10%) 미교부액 : 469,000천원 - 총사업비 : 5,696,000천원 - 지방비 기 확보액 : 5,127,000천원 (90%)	= 469,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우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2년도 미교부된 국비 469백만원 교부 신청(국비 외 지방비 기편성 완료(2022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이행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2018.2. (자체)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8. :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착수(~2022. 11.)
- 2021. 10. : 사우근린공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착수(~2022. 12.)
- 2021. 12.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착수(~2022. 11.)
- 2023. 03. :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11. : 실시계획인가
- 2023. 12. : 보상 착수
- 2024. 01. :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 2024. 10. ~ 2025.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5,696,000	5,227,000	469,000	469,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2,976,000	2,976,000	0			
	보상비	800,000	800,000	0			
	공사비	1,500,000	1,031,000	469,000	469,000		
	감리비	400,000	400,000	0			
	부대비	20,000	2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2022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2023	실시설계용역 착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실시계획인가 신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00,000	148,794	351,206	-	
2022	5,078,206	138,330	4,869,173	70,703	
2023	4,869,173	175,129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근린공원 14,965㎡ (총 면적 46,277㎡)	본예산 요구액 (천원)	469,000
부기명 (세부사업)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위치	사우동 산15-2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6급 황원범	전화	5503
-----	-------	------------	-----	----------	----	------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동 산103-1번지 일원
사업규모	근린공원조성 17,177㎡		
사업목적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근린공원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400,000		400,000
국비									
도비									
시비							400,000		40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계		
김포근린공원 조성공사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예정(설계용역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추진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0.10.	2024.03. 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3. :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2020.10.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2023.11. :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의회 의견 청취
- 2023.12. :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북변3↔김포시)
- 2024.03. : 지방재정투자심사(도)
- 2024.09.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5.06. : 실시계획인가
- 2025.08. : 보상 착수
- 2026.06. ~ 2027.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9,000,000	0	400,000	0	400,000	18,600,000	
공 정 별	설계비	850,000	400,000		400,000	450,000	
	보상비	15,600,000		0		15,600,000	
	공사비	2,000,000		0		2,000,000	
	감리비	500,000		0		500,000	
	부대비	50,000		0		5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2023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약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근린공원 17,177㎡	본예산 요구액 (천원)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동 산103-1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7급 김형준	전화	5624
-----	-------	------------	-----	----------	----	------

서변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3. 0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북변동 215-1번지 일원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m, B=25m		
사업목적	-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600,000		600,000			2,000,000
국비				60,000		60,000			
도비				36,000		36,000			
시비				504,000		504,000			2,00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서변로 개설사업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 등 불편이 예상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실시설계 추진 및 2024년 보상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2.11.	2023.01.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3. :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2020.10.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23.01.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07.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2023.08. : 실시설계(보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
- 2024.06. : 실시계획인가
- 2024.07. : 보상 착수
- 2025.06. ~ 2026.12. : 공사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9,300,000	600,000	2,000,000	0	2,000,000	6,7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7,600,000	400,000	2,000,000		2,000,000	5,200,000
	공사비	1,500,000		0			1,5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2023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道),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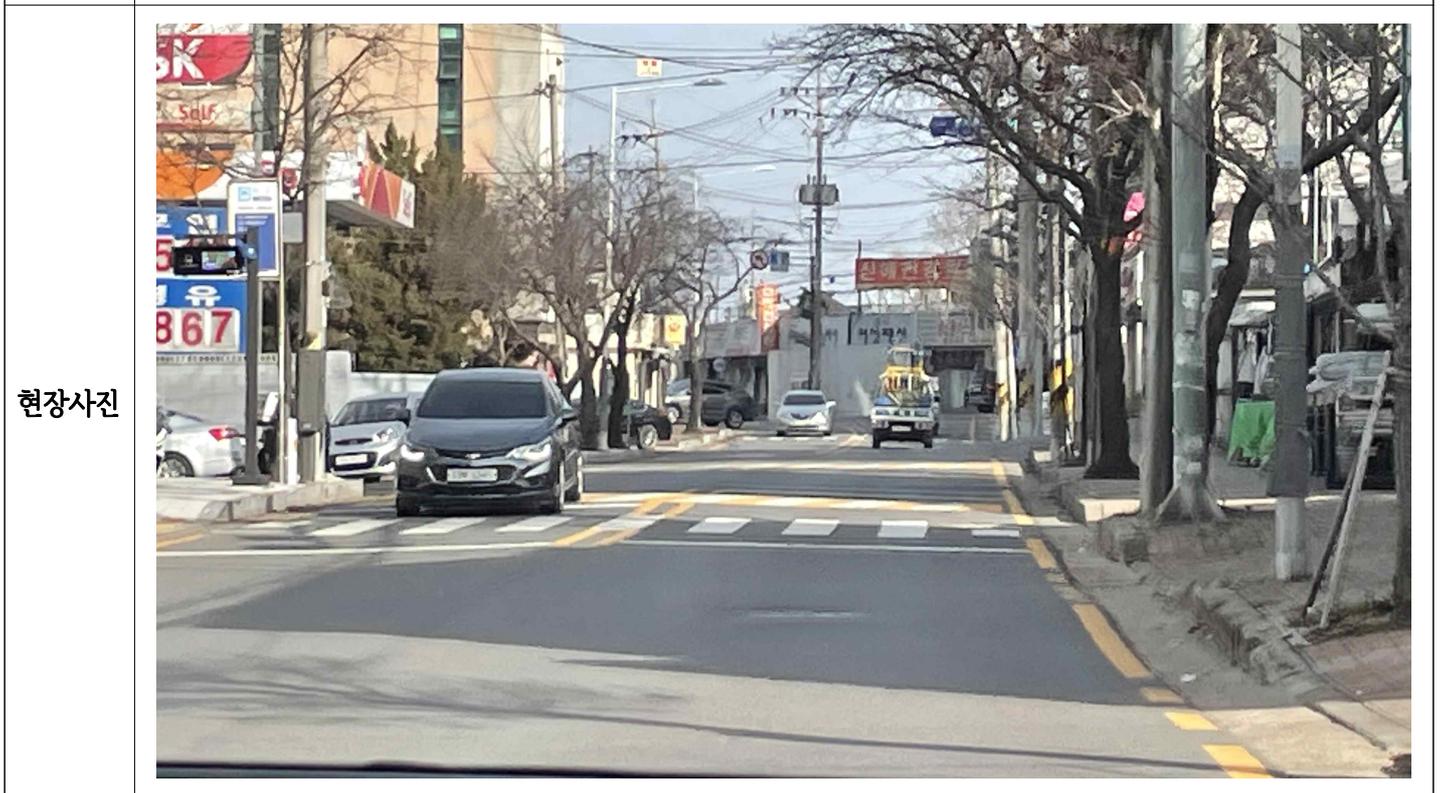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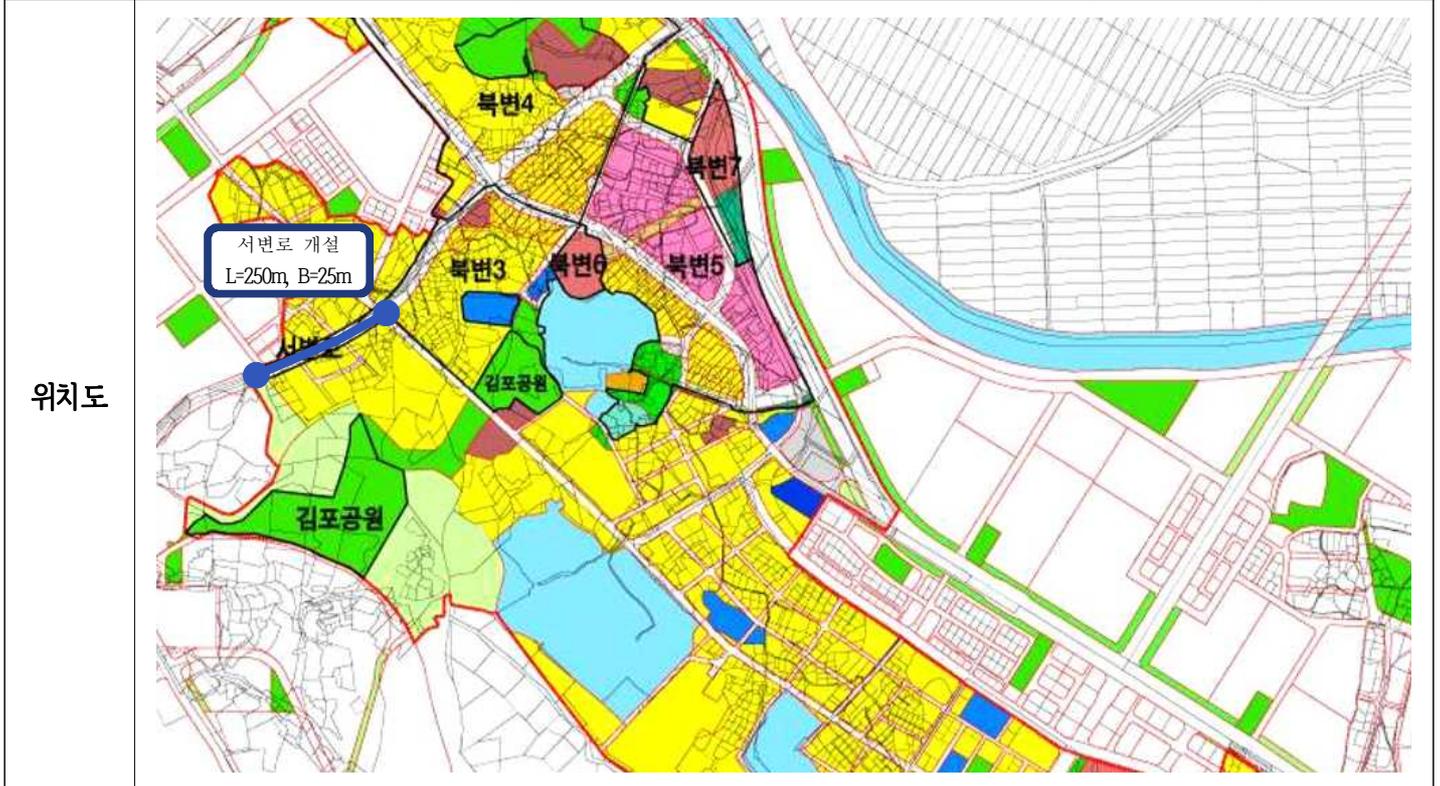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600,000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L=250m, B=25m 도시계획도로 개설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서변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북변동 215-1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9급 조유진	전화	5594
-----	-------	------------	-----	----------	----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10.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북변중로 65번길 4-6번지 일원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12,766㎡ [행정복지센터(지하1층/지상3층), 어울림센터(지하1층/지상5층)]				
사업목적	늘어나는 김포본동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해당조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4,005,000	1,082,984	2,922,017	17,030,000	41,070	19,910,946	5,500,000	500,000	5,000,000
국비	1,737,000	534,000	1,203,000		19,374	1,183,626			
도비							500,000	500,000	
시비	2,268,000	548,984	1,719,016	17,030,000	21,696	18,727,320	5,000,000		5,00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미교부액 : 500,000천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생활SOC사업 선정) 총사업비(매칭) : 4,475,000천원 지방비 기 확보액 : 2,238,000천원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하반기 철거 공사 및 신축 공사 사업비 일부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금년도 말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착수 예정으로 익년 하반기 지장물 철거 및 신축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비 일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19.11.	2021.5. (중양)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9.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 2021.06.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양)
- 2021.11. : 설계공모
- 202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07. :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착수
- 2023.06.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 2023.0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3.10. : 실시계획인가
- 2023.11. :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
- 2023.12. : 보상착수
- 2024.06. ~ 2026.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53,000,000	21,035,000	5,500,000	500,000	5,000,000	26,465,000	
공 정 별	설계비	2,054,000	2,054,000	0			
	보상비	17,000,000	17,000,000	0			
	공사비	30,000,000	1,921,000	5,000,000	500,000	4,500,000	23,079,000
	감리비	1,146,000		500,000		500,000	646,000
	부대비	2,800,000	60,000	0			2,7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중앙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20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착수
2023	재정비축진계획(북변6구역) 변경 결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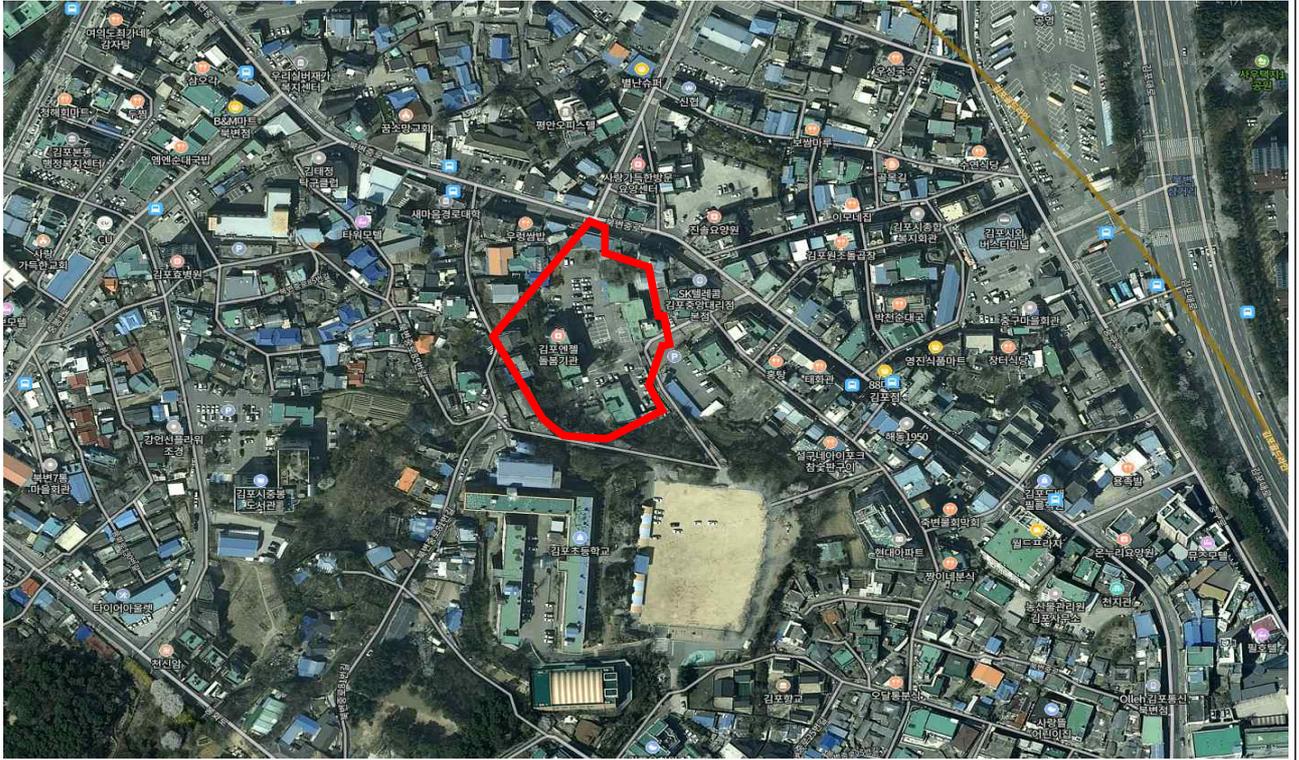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771,000	-	2,771,000	-	
2022	4,005,000	1,802,984	2,922,016	-	
2023	19,952,016	41,07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연면적 12,766㎡ (행정복지센터 지하1/지상3) (어울림센터 지하1/지상5)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북변중로 65번길 4-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7급 김형준	전화	5624
-----	-------	------------	-----	----------	----	------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12. ~ 2027. 12.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24번길 56번지 일원
사업규모	연면적 4,373.2㎡ (지하1층/지상4층),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 L=40m		
사업목적	- 양촌읍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타워 설치를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및 원활한 통행로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항 ⇒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410,000	4,300	405,700	120,000		120,000
국비									
도비									
시비				410,000	4,300	405,700	120,000		12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주차장 타워 건립사업				

□ 예산요구 사유

- 양촌읍 원도심 지역의 쇠퇴,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타워를 신축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실시설계 진행 중 시행하는 예비인증 수수료 비용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비 반영
-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에 따라 부지측량·지반조사, 설계의도 구현 대가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2.11.	2022.11 (차제)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2.08.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입안신청
- 2023.03. : 주민의견청취(신문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안건상정
- 2023.0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3.05. : 실시계획인가 신청(주차장 및 문화시설), 지방재정투자심사(道) 완료(조건부)
- 2023.0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3.11. : 설계공모(제안공모) 의뢰(김포시 → 조달청)
- 2023.12.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실시설계용역 집행
- 2024.10. : 설계용역 준공(실시계획인가)
- 2025.01. : 보상 착수
- 2025.12. ~ 2027.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4,700,000	410,000	120,000	0	120,000	14,170,000	
공정별	설계비	500,000	380,000	120,000	120,000		
	보상비	4,600,000		0		4,600,000	
	공사비	8,000,000		0		8,000,000	
	감리비	1,200,000		0		1,200,000	
	부대비	400,000	30,000	0		37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2023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입안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원안수용) - 실시계획인가 신청(주차장 및 문화시설) - 공공건축심의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410,000	4,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연면적 4,373.2㎡ (지하1층/지상4층) 진입도로 (L = 0.04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24번길 5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9급 조유진	전화	5594
-----	-------	------------	-----	----------	----	------

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시설)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12. ~ 2027. 12.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24번길 58번지 일원
사업규모	연면적 996.4㎡(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 양촌읍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항 ⇒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항 ⇒ 지방자치단체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20,000		220,000	80,000		80,000
국비									
도비									
시비				220,000		220,000	80,000		8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문화시설 건립사업				

□ 예산요구 사유

- 양촌읍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실시설계 진행 중 시행하는 예비인증 수수료 비용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비 반영
- 道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에 따라 부지측량·지반조사, 설계의도 구현 대가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2.11.	2023.05(道)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2.08.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입안신청
- 2023.03. : 주민의견청취(신문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안건상정
- 2023.04.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3.05. : 실시계획인가 신청(주차장 및 문화시설), 지방재정투자심사(道) 완료(조건부)
- 2023.0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023.11. : 설계공모(제안공모) 의뢰(김포시 → 조달청)
- 2023.12.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실시설계용역 집행
- 2024.10. : 설계용역 준공(실시계획인가)
- 2025.01. : 보상 착수
- 2025.12. ~ 2027.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추경(D)		
계	8,300,000	220,000	80,000	0	80,000	8,000,000	
공정별	설계비	300,000	220,000	80,000		80,000	
	보상비	3,300,000		0			3,300,000
	공사비	4,000,000		0			4,000,000
	감리비	600,000		0			600,000
	부대비	100,000		0			1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2023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및 문화시설) 결정(변경) 입안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원안수용) - 실시계획인가 신청(주차장 및 문화시설) - 공공건축심의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2023	22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관리과	사업규모	연면적 996.4㎡ (지하1층/지상4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부기명 (세부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시설) 건립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24번길 58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황월범	담당자	시설9급 조유진	전화	5594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주 택 과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 반복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해당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50,000	450,000	450,000	0	300,000	-150,000	
시비	450,000	450,000	450,000	0	300,000	-150,000	
자부담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00,000	300,000	-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 의무관리대상 단지 : 50,000천원 × 5개 단지	= 250,000	250,000	-	
		· 모범상생관리 최우수 단지에 시설 개보수 포상금 지원 - 500세대 이상 : 30,000천원 × 1개 단지	= 30,000	30,000	-	
		- 500세대 미만 : 20,000천원 × 1개 단지	= 20,000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단지의 지속 증가와 기존 단지들의 공용시설 노후화로 정책적 지원 요구 민원 증가
- 노후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주택 조례」 제정(2004. 7. 1.) 이후 20년간 적용되었던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 및 타 시·군 기준 등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조정(단지당 최대 3천만원 → 최대 5천만원)하여

조례를 개정함(2023. 8. 9. 공포)에 따른 단지당 지원금 현실화 및 지원규모(지원 단지수) 유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 상 감액이 불가피

- ※ 2023년 : 500세대 이상 3천만원 × 9개 단지, 500세대 미만 2천만원 × 9개 단지
⇒ 총 4.5억원, 18개 단지 기준 예산수립, 현재 19개 단지 추진중
- ※ 2024년 : 의무관리대상 5천만원 × 5개 단지, 모범상생관리 최우수 2개 단지
⇒ 3억원으로 감액시, 7개 단지 지원가능
- ※ ('23.7월말 기준) 총 189개 의무관리대상단지의 보조금 수혜 확률은 산술적으로, 연간 18개 단지 지원시 10.5년에 한번 ⇒ 연간 7개 단지 지원시 27년에 한번 지원이 가능한 수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현대2차아파트 외 18개 단지 - 사업내용 : 옥상방수 및 기와개량공사, 단지내 도로 재포장,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2022	- 보조사업자 : 강변마을동부센트레빌 외 19개 단지 - 사업내용 : 횡수관 교체, 단지내 관로 준설공사, 승강기 교체, 소방간선시설 교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교체 등
2023	- 보조사업자 : 마송1차현대아파트 외 18개 단지 - 사업내용 : 도로 아스콘 및 지하저수조 부분보수, CCTV 개선, 승강기 안전부품 개선, 외벽 균열보수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430,000	430,000	-	430,000	430,000	-	-	-	-	
2022	450,000	450,000	-	450,000	450,000	-	-	-	-	
2023	450,000	450,000	-	450,000	450,000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정희규	전화	2255
-----	-----	------------------	-----	----------	----	------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등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 반복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도비30%, 시비7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0,000	320,000	320,000	0	200,000	-120,000	
도비	60,000	96,000	96,000	0	60,000	-36,000	
시비	140,000	224,000	224,000	0	140,000	-84,000	
자부담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00,000	200,000	-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의무관리대상(노후 승강기) : 120,000천원 × 1개 단지 =	120,000	120,000	-	
		· 비의무관리대상(공용시설) : 40,000천원 × 2개 단지 =	80,000	80,000	-	

□ 예산요구 사유

- '23년부터 도사업 변경으로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비용 지원중 : 단지당 최대 120,000천원
- 승강기 교체 비용(대당 약5천만원) 부담으로 노후된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노후 승강기 : (미시행) - 공용시설 : 5개 단지 지원(대광연립, 태산연립, 인창연립, 김포1차아파트, 북변현대아파트)
2022	- 노후 승강기 : (미시행) - 공용시설 : 6개 단지 지원(김포2차아파트, 동광연립, 태일포로미, 김포1차아파트, 통진연립, 무림연립)
2023	- 노후 승강기 : 3개 단지 지원(삼환아파트, 효성아파트, 신화아파트) - 공용시설 : 3개 단지 지원(칠성아파트, 무림연립, 김포1차아파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	-	-	-	
2022	200,000	200,000	-	200,000	200,000	-	-	-	-	
2023	320,000	320,000	-	320,000	320,000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정희규	전화	2255
-----	-----	--------------	-----	-----	----------	----	------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 반복</td> <td>재원</td> <td><input type="/>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도비30%, 시비7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해당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5,000	50,000	50,000	0	50,000	0	
도비	22,500	15,000	15,000	0	15,000	0	
시비	22,500	35,000	35,000	0	35,000	0	
자부담	-	-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000	50,000	-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5,000천원 × 10개소 =	50,000	50,000	-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 시군종합평가 도정 주요시책지표(10개소 이상 지원실적 시 최대 배점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전년과 동일하며, 매년 실시하는 주택행정 시·군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최소 10개소 이상 휴게시설 지원실적이 요구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해당없음
2022	○ 12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7개소 : 사우길훈4차, 수정마을쌍용예가, 강변마을동부센트레빌, 초당마을중흥에스클래스리버티, 희영무지개, 청송마을모아미래도엘가,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2차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5개소 : 김포장기LH11단지, 희영무지개, 초당마을중흥에스클래스리버티, 현대아파트, 양촌금빛마을자연앤데시아양
2023	○ 14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5개소 : 진흥흥화, 오스타파라곤1단지, 푸른마을신안실크밸리1차,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 김포풍무꿈에그린더포레듀4단지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9개소 :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 푸른마을신안실크밸리1차, 김포풍무꿈에그린더포레듀4단지, 강변마을동부센트레빌, 김포장기LH11단지, 고창마을이니스터원,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풍무푸르지오, 이랜드타운힐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	-	-	-	-	-	-	-	-	
2022	45,000	45,000	-	42,662	42,662	-	2,338	2,338	-	
2023	50,000	50,000	-	32,140	32,140	-	17,860	17,860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8급 서연정	전화	2419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사무관리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 단지 육성 및 소관 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 단지 육성 및 소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위원 참석수당과 운영물품 구입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 시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920	7,920	7,920	0	7,520	-400	
시비	7,920	7,920	7,920	0	7,520	-400	
기타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520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모범관리단지 선정 - 모범관리단지 선정(동판제작) 300,000원×2회 = 600 - 모범관리단지 평가반 심사수당 120,000원×7명×1회 = 840 - 공동주택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 3,600,000원 = 3,600	5,040	
		· 소관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00원×7명×2회 = 1,680 - 공동주택관리(임대)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0,000원×5명×2회 = 800	2,480	

□ 예산요구 사유

-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반의 심사수당과 선정된 단지에 수여할 동판 제작
- 주택과 소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 공동주택 단지 대상 교육자료 및 홍보 책자, 홍보물 제작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1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대면 1회)
2022	- 2022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서면 3회) - 홍보물 제작(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포스터 등) - 홍보책자 제작(공동주택 방법 및 소방안전)
2023	- 2023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대면 1회, 서면 1회) - 홍보물 제작(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포스터, 근로자 휴게시설 현판 등) - 홍보책자 제작(공동주택관리안내서, 층간소음 갈등해결 안내서, 층간소음예방관리가이드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800	645	-	2,156	
2022	7,920	4,239	-	3,681	
2023	7,920	4,160	-	3,7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8급 서연정	전화	2419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공동주택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및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해당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000	5,000	5,000	0	5,000	0	
시비	5,000	5,000	5,000	0	5,000	0	
자부담	-	0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5,000	5,000	-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자투표 비용 지원 - 250원/호(1건 기준) × 1,000세대 × 20개 단지	5,000	5,000	-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출,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각종 법정동의 시, 복잡한 절차와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자투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주택 내 입주자간 분쟁 예방에 기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당곡마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외 19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2022	○ 캐슬앤파밀리에시티2단지 외 10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2023	○ 캐슬앤파밀리에시티1단지 외 14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21	5,000	5,000	-	3,669	3,669	-	1,331	1,331	-	
2022	5,000	5,000	-	2,641	2,641	-	2,359	2,359	-	
2023	5,000	5,000	-	4,227	4,227	-	773	773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정희규	전화	2255
-----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공동주택 법정교육)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사업목적	법정 의무교육을 통한 관리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방법 강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법 제17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령 제18조제5항
	법령 위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교육 수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617	6,662	6,662	0	6,779	117	
시비	6,617	6,662	6,662	0	6,779	117	
기타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779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비 산출기준 : 1,597개동×30%×1만원	= 4,791	
		· 소방·방법 집합교육(하반기 1회 × 총 4시간)=1,988천원 - 강사료 : 2인*2시간(최초1시간 150,000원+초과매시간 80,000원) = 460 - 여비 : 2인*85,000원(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호 등급, 1일) = 170 - 교재 제작비 : A4 80면×200부×60원×1.1 = 1,056 - 일반관리비 : (강사료+여비+교재비)*6% = 102 - 현수막·배너 제작비 : 100,000원×2개 = 200	= 1,988 = 460 = 170 = 1,056 = 102 = 200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의무 법정교육 시행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입주 단지 반영으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동수('23.7월말 기준 1,597개동) 증가에 따라 온라인교육 지원비용 경미한 증가(약 12만원) 예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동주택 운영·유리 온라인교육 수료자 : 718명(교육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2022	- 공동주택 운영·유리 온라인교육 수료자 : 904명(교육비 지원) - 소방안전·방범 집합교육 실시(2022.10.19.) : 240명 참석
2023	- 공동주택 운영·유리 온라인교육 수강자(수료+학습중) : 728명(교육비 지원) - 소방안전·방범 집합교육 실시(2023.10.25.) : 321명 참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211	4,395	-	816	
2022	6,617	6,555	-	62	
2023	6,662	6,589	-	7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우명숙	전화	2348
-----	-----	------------------	-----	----------------	----	------

영구임대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영구임대주택 21개 단지	대표자	영구임대주택 21개 단지 관리사무소
사업목적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 21개소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 반복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7,000	60,000	60,000	0	60,000	0	
시비	57,000	60,000	60,000		60,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0,000	60,000	-	
영구임대 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238,095원 × 21개 단지 × 12개월	= 60,000	60,000	-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및 2024년 전·하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 증액 필요
-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공동전기요금 추가 지원(2023년 03월 부터)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및 2024년 전·하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므로 2024년 예산 증액 필요
-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공동전기요금 추가 지원
 - 김포마송LH 6단지(준공일 : 2022.10.18.), 김포마송LH 4단지(준공일 : 2022.12.29.)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17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22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18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23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20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0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57,000			49,615			7,385		
2022		57,000			52,443			4,557		
2023		60,000			50,810			9,1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석낙완	담당자	시설7급 한진만	전화	2405
-----	-----	--------------	-----	----------	----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9개 단지		
사업목적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
		·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3,000	53,000	53,000	0	5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3,000	53,000	53,000		5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000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201-01 사무관리비	· 전문감사관 수당: 300,000×4명×10회×4일 ·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비: 500,000원×10회	= 48,000 5,000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 기획감사 및 컨설팅감사등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 대응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2. : 12개 단지 감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2022. 12. : 15개 단지 감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2023. 1.~10. : 1개단지 민원감사, 10개 단지 기획감사 실시
- 2023. 11.~12. : 기획감사, 민원감사 등 실시
- 2024. 1.~12. : 민원감사 및 기획감사, 컨설팅감사 등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8. 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민원감사 2개 단지 실시 - 컨설팅감사 4개 단지 실시 - 기획감사 4개 단지 실시 - 경기도 지정 감사 2개 단지 실시 -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2022	- 기획감사 11개 단지 실시 - 민원감사 2개 단지 실시 - 컨설팅감사 2개 단지 실시 -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2023	- 기획감사 10개 단지 실시 - 민원감사 1개 단지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3,000	59,295	-	3,704	
2022	63,000	61,316	-	1,684	
2023	53,000	35,853	-	17,0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김유영	전화	2444
-----	-----	--------------	-----	----------	----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공동주택
사업규모	관내 아파트 16개 단지(38개동)		
사업목적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4,000	44,000	44,000	0	39,900	-4,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	44,000	44,000		39,900	-4,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900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 역	401-01 시설비	525,000원 × 38개동(16개단지) × 2회(상·하반기)	= 39,90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제3종시설물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지정된 시설물 중 12개동(6개 단지)이 철거되어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2023.3.29. 고시)됨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50개동(22개 단지)에서 38개동(16개 단지)로 줄어듦.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3.11.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월 ~ 02월 : 정기안전점검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4. 03월 ~ 06월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 2024. 07월 ~ 12월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 입력 완료(21년 하반기부터 관리주체 김포시로 이관)
2022	- 상·하반기 2회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 입력 완료
2023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 입력 완료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2,000	19,800	-	2,200	
2022	44,000	36,740	-	7,260	
2023	44,000	34,610	-	9,3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석낙완	담당자	시설7급 허은정	전화	2404
-----	-----	--------------	-----	----------	----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과 운영 물품 구입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64조
		·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8조 제30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4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1,780	15,000	15,000	0	15,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11,780	15,000	15,000	0	15,00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여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	
		- 공동주택 감리 및 현장점검 참여수당 200,000원×2명×21회 =	8,400	
		-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0,000원×8명×3회 =	2,880	
		- 공동주택 점검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520,000원 =	520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품질점검단(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수당
- 품질점검, 감리수행실태점검 및 각종 안전 점검을 추가 운영하여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주택과 소관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위한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예산요구액이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동주택 품질 및 안전점검 실시(10회) - 2021년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1회)
2022	-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5회) - 감리업무수행실태점검, 안전 등 현장점검 실시(20회)
2023	-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4회) - 감리업무수행실태점검(11회) - 해방기 등 안전점검(6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200	2,627	-	6,573	
2022	12,010	12,010	-	-	
2023	15,000	13,008	-	1,992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행정팀장 권상우	담당자	시설8급 박가현	전화	2406
-----	-----	--------------	-----	----------	----	------

주거급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2,500(예상)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거급여법		제7조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8,446,609	21,213,667	21,213,667	0	22,215,556	1,001,889	
국비	16,601,948	19,092,300	19,092,300	-	19,994,000	901,700	
도비	1,291,263	1,484,957	1,484,957	-	1,555,089	70,132	
시비	553,398	636,410	636,410	-	666,467	30,057	
기타	-	-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215,556	
기초생활 임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각 가구특성별 임차료 지급(12,500가구)	= 22,070,164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28가구)	= 145,392	
		- 중보수 : 8,490천원*6가구*0.9	= 45,846	
		- 경보수 : 4,570천원*22가구*0.9	= 90,486	
		※ 추가지원(장애인 또는 고령자 수급자)		
		- 장애인 편의시설 : 3,800천원*4가구*0.3	= 4,560	
- 고령자 편의시설 : 500천원*15가구*0.6	= 4,500			

□ 예산요구 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90:7:3)에 따라 임차급여(전·월세지원),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집수리 지원)를 지원하여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주거비 지원 및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7% → 48%) 및 기준임대료 상승(4인기준: 394천원→414천원)에 따라 전년대비 주거급여예산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가구 : 7,960가구(11,651명) / 월평균 소요예산 : 1,308,954천원(총 집행액: 15,707,452천원) - 수선유지급여 27가구 공사 완료(총 집행: 143,483천원)
2022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가구 : 8,822가구(12,763명) / 월평균 소요예산 1,507,424천원(총 집행액: 18,089,098천원) - 수선유지급여 33가구 공사 완료(총 집행: 158,605천원)
2023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가구 : 9,585가구(13,876명) / 월평균 소요예산 1,667,136천원(총 집행액: 16,952,591천원) - 수선유지급여대상 27가구 공사 진행중(총 집행: 170,34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6,297,209	15,850,935	-	446,274	
2022	18,446,609	18,247,703	-	198,906	
2023	21,213,667	17,122,934		4,090,7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전삼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정민 사회복지8급 정진희 사회복지9급 조은별	전화	2416 2417 2414
-----	-----	------------	-----	--	----	----------------------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주택과
사업규모	김포시 주거복지센터 1개소		
사업목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제11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34,302	34,30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34,302	34,30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302	
김포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	101-04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 11,210원*8시간*103일 = 9,238 - 유급휴일수당 : 11,210원*8시간*31일 = 2,781 - 보험료 : 12,017,120*14% = 1,683		
	201-01 사무관리비	· 센터운영비: 1,000천원*3월 = 3,000 · 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2회=1,000천원 = 1,000 · 복합기 임차 등: 400천원*4월=1,600천원 = 1,600 · 홍보물 제작: 2,000천원 = 2,000		
	201-03 행사운영비	· 주거복지센터 개소식 비용 : 1,000천원 = 1,000		
	401-01 시설비	· 인테리어 공사 10,000천원 = 10,000		
	405-01 자산취득비	· 센터 물품구입(책상, 의자 등): 2,000천원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지원,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사업,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원스톱지원이 가능한 김포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이 절실함.

□ 예산증감 사유

- 주거복지센터 기능강화로 주거 취약계층 전체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구성 및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국토부 발표('23. 3. 20.)
-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립 지속 촉구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2월 :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4.3월 :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 2024.7월 : 주거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 2024.9월 : 주거복지센터 현판식 및 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전삼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정민	전화	2416
-----	-----	------------	-----	------------	----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가구		
사업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 능력에 적합한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600	11,400	11,400	-	22,800	11,400	
국비	3,800	5,700	5,700	-	11,400	5,700	
도비	-	-	-	-	-	-	
시비	3,800	5,700	5,700	-	11,400	5,700	
기타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80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3,800천원 * 6가구	= 22,8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1:1)에 따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배정량 증가(3가구 -> 6가구)로 예산 증액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4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및 선정
- 2024.05.~2024.11.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진행
- 2024.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양촌읍 김0열 단열, 도배, 전기배선 공사 ○ 월곶면 한0희 현관 앞 경사로 및 난간 설치
2022	○ 하성면 최0희님 단차제거, 문턱 제거, 안전 바 설치 ○ 통진읍 정0덕 화장실 공사, 입구 접자 블록 시공
2023	○ 하성면 한0희 싱크대 교체, 온수기 설치, 전기배선 및 조명 교체 ○ 풍무동 김0경 욕실 세면대 교체, 문 및 문틀 교체, 환풍기 교체, 조명 교체 ○ 김포본동 김0성 창호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7,600	7,600	-	-	
2022	7,600	7,600	-	-	
2023	11,400	7,600	-	3,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전삼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30가구(예상)		
사업목적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의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611호, 2023.4.7.	
	위임규정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사업, 이사비·생필품지원 사업 ,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80,000	0	80,000	12,000	12,000	
국비	-	40,000	-	40,000	6,000	6,000	
도비	-	40,000	-	40,000	1,800	1,800	
시비	-	-	-	-	4,200	4,200	
기타	-	-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1가구당 최대 400천원 지급 : 400천원 * 30가구	12,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50:15:35)에 따라 이사비 또는 생필품비를 최대 400천원 지원하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 강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대상자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주거사다리)사업 최종 선정자(52명) 및 복지과 이사비지원 사업 지원자(25명)를 제외한(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실제 수요 기준으로 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총 신청자수 : 17명(총 집행액: 6,134,14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80,000	6,134	-	73,86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전삼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정민	전화	2416
-----	-----	------------	-----	------------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수혜 청년 가구 약 192가구		
사업목적	전세피해 주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위임규정	청년기본법	제20조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청년 기본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23.10.11. 조례개정 34세 -> 39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57,600	57,600	
국비		-			28,800	28,800	50%
도비		-			8,640	8,640	15%
시비		-			20,160	20,160	35%
기타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600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수혜청년 가구수 * 지원액 - 192가구 * 300천원	= 57,600	

□ 예산요구 사유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후속조치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3년도 정부 신규 사업편성
- 국가주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국:지방비)=50:50(도비15:시비35)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에게 실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보증기관 :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공사(SGI)
-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국토부 사업규모 확대로 배정량 증가(96가구->192가구)
 - ※ 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규모는 96가구 28,800천원이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중, 종말추경(23.12.20.) 반영 예정.
-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안 개정으로 청년연령 기준을 19세 ~ 34세에서 19세 ~ 39세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 확대[23.10.11. 공포 경기도 주택정책과-17787(23.10.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4.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총 신청가구 : 94가구(선정적합 : 26가구, 집행액(13가구지급) : 2,754,110원/ 선정부적합 : 12가구/ 검토중 : 56가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	-	-	-	
2023	18,720*	2,754		15,966	10.31.기준 집행현황

*2023년 예산현액 국도비 성립전예산액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전삼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건축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촌지역
사업규모	빈집 정비 보조 2,000천원*5개소		
사업목적	청소년 탈선·우범장소 및 범죄자 은닉장소를 사전 제거하여 농촌 지역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해당조례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000	30,000	30,000	0	10,000	-20,000	
국비		0				0	
도비	6,000	6,000	6,000		2,000	-4,000	
시비	24,000	24,000	24,000		8,000	-1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촌 빈집 정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 2,000천원 * 5개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빈집이 청소년의 탈선·우범 장소 및 범죄자 은닉장소 등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수요조사 실시 결과 빈집정비 희망자 5명으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
- 2024.02. :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 2024.03. ~ 12. :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4.12. : 보조사업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빈집 15동에 대한 빈집정비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당 200만원 지급)
2022	- 빈집 15동에 대한 빈집정비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당 200만원 지급)
2023	- 빈집 7동에 대한 빈집정비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당 200만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0,000	30,000		0	
2022	30,000	30,000		0	
2023	30,000	14,000		16,000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공업8급 송진우	전화	2399
-----	-----	------------	-----	----------	----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사업규모	6개 단지, 96백만원(도비 30%, 시비70%)		
사업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2,000	112,000	64,000	48,000	96,000	32,000	
국비		0				0	
도비	9,600	33,600	19,200	14,400	28,800	9,600	
시비	22,400	78,400	44,800	33,600	67,200	22,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6,000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사업량 : 16,000,000원*6개 경기도 가내시 6개 단지	= 96,00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22년 2개소 → '23년 7개소 → '24년 6개소(가내시)
- '22년도 20개 단지 신청, '23년도 30개 단지 신청으로 보면 수요 증가 및 매년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늘기 때문에 '24년 신청 단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기 예산이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22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개소 지원
- 2023.01.~2023.12. :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0개소 지원
- 2023.12. : 도비 확정내시 알림
- 2024.02. : '24년 지원사업 공고
- 2024.03. : 신청지 현장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 2024.04.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착수
- 2024.12. : '24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년 신규사업)
2022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31,940,000원)
2023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110,755,68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32,000	31,940	-	60	
2023	112,000	110,756	-	1,24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6개 단지	본예산 요구액 (천원)	96,000	
부기명 (세부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현장사진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한양빌라)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태양다세대)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진성다세대)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서암다세대)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보인그린맨숀)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동하빌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8급 김형중	전화	2386
-----	-----	------------	-----	----------	----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표자	-
사업목적	열악하고 낙후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계) 반복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법령 위임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관리 비용 지원) ⇒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2,000	48,000	48,000	0	48,000	0	
시비	32,000	48,000	48,000	0	48,000	0	
자부담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자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16,000천원 × 3개 단지	= 48,000	48,000	-	자부담 20% 이상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 부재, 입주자가 수선비용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며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고 열악하여 공용시설 보수가 어려운 실정임
- 사업내용 : 단지 내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 지원
*예시: 옥상(방수),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사업물량 동일하여 예산 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년 신규사업)
2022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급 = 32,000천원
2023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급 = 47,94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1										
2022	32,000	32,000	-	32,000	32,000	-	0	0	-	
2023	48,000	48,000	-	47,940	47,940	-	60	60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현장사진 또는 예시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3개 단지	본예산 요구액 (천원)	
부기명 (세부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48,000	
현장사진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단지(진성연립)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단지(동하빌라)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단지(태양다세대)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단지(장릉다세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8급 김형중	전화	2386
-----	-----	------------	-----	----------	----	------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연20회 이상 개최)		
사업목적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구조안전심의 등 전문위원회 심의, 건축사 징계위원회 등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문화를 육성하여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법	제4조
		제4조(건축위원회)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건축조례	제11조
		제11조(수당 등)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6,800	22,200	22,200	0	15,2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800	22,200	22,200	0	15,2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200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동(건축·경관·교통)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 80,000원*10명*8회	=	6,400
		· 건축구조·해체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 80,000원*5명*12회	=	4,800
		· 기타 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 80,000원*5명*10회	=	4,000
			=	
			=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법 제4조 및 김포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둠
- 건축 및 구조안전 심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교통성 검토 심의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건축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건축문화 정착.
- 건축사 징계(50만 대도시 위임사무)를 위하여 건축사법 제30조4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 하였으며 안건 발생 시 심의를 거쳐 건축사 징계 처분

□ 예산증감 사유

-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심의안건 감소(전년 대비 4건 감소)로 운영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 월 1회 이상 심의 개최(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포함)
- 구조·해체분야 전문위원회 : 월 2회 이상 심의 개최
-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교통성 검토 등 전문위원회 : 발생 시 수시 개최
- 건축사징계위원회 : 발생 시 수시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 3,440천원 - 구조위원회 참석수당 : 1,600천원 - 기타위원회 참석수당 : 1,670천원
2022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4,400천원 - 구조위원회 참석수당 : 2,160천원 - 기타위원회 참석수당 : 1,660천원
2023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2,840천원 - 구조위원회 등 기타위원회 참석수당 : 2,1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 2,37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4,400	6,710	-	7,690	
2022	16,800	8,220	-	8,580	
2023	22,200	7,316	-	14,8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7급 송지은	전화	2400
-----	-----	------------	-----	----------	----	------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통신비		
사업목적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물품 및 통신비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5항	
	법령 위임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200	1,200	1,200	0	1,260	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0	1,200	1,200		1,260	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60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201-02 공공운영비	· 통신비 : 52,500원*2대*12월	= 1,260	

□ 예산요구 사유

- 현장점검시 민원인 응대에 필요한 공용폰 사용으로 적극행정 장려

□ 예산증감 사유

- 공용폰 변경으로 통신비 증감에 따라 예산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통신비 지출(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2022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2023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200	1,157	-	43	
2022	1,200	1,156	-	44	
2023	1,200	1,072	-	1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동학준	담당자	시설7급 홍민주	전화	2408
-----	-----	------------	-----	----------	----	------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220건		
사업목적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7항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0,000	106,000	106,000	0	99,0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	106,000	106,000	0	99,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9,000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201-01 사무관리비	· 검토 위탁 수수료 : 450,000원*220건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위탁 수수료 평균 예상가 450,000원 산정 (연면적별 수수료 상이) - '23년 위탁계약 현황 : 257건(사용승인 228건, 기존건축물 29건)	99,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주가 제출한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대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예상에 따른 위탁 수수료 인상분(약 10%상승) 및 사업량 감소 예상에 따른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24.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1년(5월~12월) 적정성 검토 용역 43,937천원 준공(사용승인 139건 37,726천원, 기존건물 4건 2,216천원)
2022	- 총 245건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성 86,663천원 준공(사용승인 217건 66,946천원, 기존건물 28건 19,717천원)
2023	- 총 163건 건축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사용승인 106건, 기존건물 57건) (23.10.31.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0,160	43,937	-	16,223	
2022	100,000	86,663	-	13,337	
2023*	106,000	0	-	10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2023년 계약금액 97,502,240원('23년 상반기 사용승인건 저조에 따른 일괄 집행 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문광수	담당자	시설7급 김완보	전화	5350
-----	-----	--------------	-----	----------	----	------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사업목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등 사전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30조의4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000	9,000	9,000	0	12,000	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000	9,000	9,000	0	12,000	3,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외부 전문가 점검(자문) 수당 : 150,000원*2명*40회 ※ 2022년 안전점검 자문수당과 동일하게 산정(150,000원) (건축과-55648호, 2021. 12. 30.)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현장점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와 현장점검을 통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자문) 수행(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공공건축물 공사장 점검 등 총 55개소 안전점검 수행
2023	- 해빙기 대비,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공공건축물 공사장 합동점검 등 총 24개소 안전점검 수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2022	9,000	7,500	-	1,500	
2023	9,000	4,350	-	4,6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문광수	담당자	시설7급 김완보	전화	5350
-----	-----	--------------	-----	----------	----	------

건축물 안전관리 물품구입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물품 구입		
사업목적	건축물 안전점검 물품구입을 통한 원활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점검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조, 제15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960	2,440	2,440	0	1,600	-8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960	2,440	2,440	0	1,600	-8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요구액	비고
		합 계	1,600	
건축물 안전관리 물품구입비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물품 구입비 : 1,000,000원*1식 - 안전모, 안전장갑, 재난안전선 등 안전용품 구입 = 1,000 점검반 피복비 : 100,000원*6인 - 점검용 피복 : 50,000원 * 6인 = 300,000원 = 600 - 안전화 : 50,000원 * 6인 = 300,000원 		

□ 예산요구 사유

-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시 안전모, 안전장갑, 재난안전선 등 안전용품 필요
- 안전한 현장점검을 위한 안전점검용 작업복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점검반 피복비 비용 감액에 따라 안전관리 물품구입비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건축물관리 물품구입 구입(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건축물관리법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5,000장) - 점검 피복 및 안전관리 물품(안전모, 균열폭측정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구입
2023	-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용 피복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16,223	
2022	5,960	5,599	-	361	
2023	2,440	1,440	-	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문광수	담당자	시설7급 김완보	전화	5350
-----	-----	--------------	-----	----------	----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사업기간	2024. 4. ~ 2024. 7.(4개월)	사업위치	관내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
사업규모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대상시설물 6개소		
사업목적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상태 확인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400	4,000	4,000	0	6,000	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	4,000	4,000	0	6,000	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 용역비 : 1,000,000원*6개소 ※ 기술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 포함	= 6,000	

□ 예산요구 사유

-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 및 안전성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대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예상에 따른 위탁 수수료 인상분(약 10%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7. : '24년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건축과-8841호)
- 2024.03.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4.07. : 용역준공 및 지정 대상 확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3개소 용역비 : 4,928천원
2022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4개소 용역비 : 2,400천원
2023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5개소 용역비 : 4,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060	4,928	-	132	
2022	2,400	2,400	-	-	
2023	4,000	4,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문광수	담당자	시설7급 김완보	전화	5350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업규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업목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상시 유지보수체계를 수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위임규정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1,920	46,800	46,800	0	46,8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1,920	46,800	46,800	0	46,8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800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주전산기 서버 유지보수 : 3,020,000원*12월 ·GIS 및 미들웨어 유지보수 : 880,000원*12월	= 36,240 = 10,560	

□ 예산요구 사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상시 유지보수체계를 수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장애발생 대비, 예방정비,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2. : 2024년도 주전산기 서버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4.01. : GIS 및 미들웨어(상용S/W)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4.01.~2024.1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2022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2023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1,920	32,569	-	9,351	
2022	41,920(42,420)	42,381	-	39	500천원 예산변경증액
2023	46,800	30,361	-	16,4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8급 안재현	전화	2134
-----	-------	----------	-----	----------	----	------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토지정보과 지적팀
사업규모	지적민원처리결과 통지 약 2,880건,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12개월, 업무배상공제회비 11명		
사업목적	소모품 구입, 지적민원처리결과 우편료,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5호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0,628	22,704	31,704	-9,000	14,039	-17,66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628	22,704	31,704	-9,000	14,039	-17,6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39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	201-01 사무관리비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833,333원*12월	= 10,000	
	201-02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 195,800원*12월 ·업무배상공제 회비(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 153,500원*11명	= 2,350 = 1,689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체계 수립
-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배상공제 가입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던 우편료를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요금 감
- 업무배상공제 회비 가입인원 감소(13명→1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02. : 업무배상공제 및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4.01.~2024.12. :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 통지 등 우편료 지출 -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계약체결(계약금액:2,350천원)
2022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 통지 등 우편료 지출 -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계약체결(계약금액:2,350천원)
2023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 통지 등 우편료 지출 - 지적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계약체결(계약금액:2,3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9,774	27,876	-	3,376	
2022	30,628(30,328)	30,294	-	34	300천원 예산변경금액
2023	22,704	13,778	-	8,9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민성근 시설8급 윤성근	전화	2132 5250
-----	-------	----------	-----	----------------------	----	--------------

영구지적물 전산화 사업

사업기간	2024. 4. ~ 2024. 10.	사업위치	김포시청 정보관 서버실
사업규모	2022년 측량결과도 1,1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사업목적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제2항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42,276	42,276	42,276	0	38,376	-3,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276	42,276	42,276	0	38,376	-3,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376	
영구지적물 전산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년 측량결과도(A2) 전산화 추진 : 7,800원*1,120매 = '22년 토지이동결의서(A4) 전산화 추진 : 780원*38,000매 =	8,736 29,640	

□ 예산요구 사유

- 영구보존문서로서 종이로 작성되어있는 방대한 양의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등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시 복구자료 사전확보
- 토지정보과 및 타부서의 소송 및 인·허가 확인 등 업무 협조 요청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22년도부터 지적측량성과검사를 Ontact로 실시함에 따라, 기존 종이로 작성되던 측량결과도가 상당 부분 PDF파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전년 대비 전산화 대상 측량성과도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예정	-	-
일자	2023.11.	-	-	-	-	-	-	2023.8.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8. : 202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04. : 202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 계약 체결
- 2024.06. ~ 2024.10. : 202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사업기간 : 2021.3.~ 2021.6. - 사업량 : '19년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1,6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2022	- 사업기간 : 2022.3.~ 2022.9. - 사업량 : '20년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1,6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2023	- 사업기간 : 2023.3.~ 진행중 - 사업량 : '21년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1,6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0,650	35,771		4,879	
2022	42,276	37,260		5,016	
2023	42,276	37,680		4,59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8급 윤성근	전화	5250
-----	-------	----------	-----	----------	----	------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관내 중개업소(약 1,300개소) 및 법무사 등 불특정 다수 민원인		
사업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교육 활동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 단속 활동을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한 사항을 관내 법무사사무소 등을 민원인에게 홍보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6조, 제28조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등 홍보물 제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590	13,580	11,352	2,228	2,700	-8,65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590	13,580	11,352	2,228	2,700	-8,65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 1,000원×2,700매	= 2,700	

□ 예산요구 사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 예산증감 사유

- 우편료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요금 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전·월세 제도 시행 관련 등)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집행
- 2023.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지출
- 2024.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부동산 거래 제도 변경 홍보 현수막 제작 : 1회 - 부동산 거래 제도 변경 홍보 리플릿 제작 구매 : 8,000매 -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 2,000부 -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제도 및 지적산산자료 발급 홍보용 배너 구입 : 1회
2022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 2,000부
2023	-부동산거래신고 업무 직무교육 교재 제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 3,000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0,350	10,140		210	
2022	10,590	9,348		1,242	
2023	13,580	8,183		5,397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행정9급 조현진	전화	2149
-----	-------	------------	-----	----------	----	------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기간	2024. 01. ~ 12월 중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관내 공인중개사 920여명 대상				
사업목적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 실무에 관한 사항을 재숙지하고 인지하여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1.연수교육 실시 2.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380	5,468	5,468	0	11,104	5,636	
국비		0				0	
도비	10,380	5,468	5,468		11,104	5,636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104	
세부사업명 입력 (부기입력X)	201-01 사무관리비	·강사료 : 1,050,000원*2회 ·대관료 : 500,000원*2회 ·교재비 : 6,000원*920권	= 2,100 = 1,000 = 5,520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 2700원*920권	= 2,484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 2024년 연수교육대상자 920명(예상)을 대상으로 김포시 관내에 장소를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 2회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 연수교육 대상자(경기도 산정) 500명 대비 2024년 연수교육 대상자(경기도 산정)는 920명으로 인원이 420명 증가하여 교육 회차 및 교재 등 비용 증가로 인한 예산 요구액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8. : 2023년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 안내 문자 알림 및 교재 배부, 연수교육 사전접수 시행
- 2023. 09. 12. :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집합)교육 시행
- 2024. 01 ~ 12. :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연수(집합)교육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경기도 산정 420명(김포시 산정 350명) 대상으로 위탁기관 5곳을 통해 사이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12시간 진행 및 연수교육 교재 발송
2022	-경기도 산정 1,000명(김포시 산정 1,087명) 대상으로 위탁기관 5곳을 통해 사이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12시간 진행 및 연수교육 교재 발송
2023	-경기도 산정 500명(김포시 산정 372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8월 중 교재및 안내 우편 발송 -2023.09.12. 연수(집합)교육 6시간 진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872	3,000		1,872	
2022	10,380	9,340		1,040	
2023	5,468	5,428		4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9급 전해인	전화	2147
-----	-------	------------	-----	----------	----	------

부동산관련 민원처리 업무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3,000건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2,880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3,000건,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3,100건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5,000건 -관용차량 운영 관리 3대		
사업목적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과태료) 결과 등을 신속하게 우편 통지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위임규정	공인중개사 개설, 변경사항(사무소 이전 등),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 우편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45,436	45,4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45,436	45,4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436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2,900원*2,880건	=	8,352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2,900원*2,880건	=	8,3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2,900원*3,000건	=	8,700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4,220원*3,100건	=	13,082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430*5,000건	=	2,150
		-관용차량 유지비 : 1,600,000원*3대	=	4,800

□ 예산요구 사유

○ 각 팀별 우편요금을 통합하여 세부사업 추가 편성, 고정배차 공용차량 사용·소관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고정배차 공용차량 사용·소관 전환에 따른 차량 유지비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12. : 각 팀별 우편요금 지출
- 2023. 01. ~ 12. : 각 팀별 우편요금 지출
- 2024. 01. ~ 12. : 우편요금 통합 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2022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2023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1,108 (38,108+3,000(예산변경))	39,487		1,621	
2022	50,085 (43,585+6,500(예산변경))	48,361		1,724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우편료 증
2023	40,636	27,945		12,69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이정우	전화	2145
-----	-------	------------	-----	----------	----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약 178,706필지		
사업목적	토지 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각종 공부 조회 및 토지 특성 현지 조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조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7,219	98,329	98,329	0	84,933	-13,396	
국비							
도비						0	
시비	97,219	98,329	98,329		84,933	-13,396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93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201-01 사무관리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 80,000원×11명×5회	= 4,40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출력 및 제본	= 5,017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산정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직권정정 등)	= 68,765	
		· 프린터 토너 구입 : 200,000원×5개	= 1,000	
		· 개별공시지가 조사,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홍보 - 현수막 : 64,800원×14개×5회, 포스터 : 16,200원×15개×5회	= 5,751	

□ 예산요구 사유

-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자료인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제반 비용이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우편료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요금 감
- 고정배차 공용차량 사용·소관 전환으로 차량 유지비 통합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제반 준비	'23. 10. 16. ~ 11. 17.	'24. 6. 5. ~ 6. 25.
토지특성 조사	'23. 11. 22. ~ '24. 1. 18.	'24. 6. 26. ~ 7. 23.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3. 1. 19.	'24. 7. 19.
지가산정 및 검증	1. 25. ~ 2. 16.	7. 23.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4. 17. ~ 4. 24.	10. 10. ~ 10. 17.
지가결정·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재결정·공시	6. 27.	12. 23.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3,520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734필)
2022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8,073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493필)
2023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8,706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833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92,580	80,186		17,032	
2022	97,219	87,239		9,980	
2023	98,329	47,544		50,7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권민성	담당자	시설 7급 박민진 시설 8급 이대웅 시설 9급 홍아라 시설 9급 김민영 실무수습 공지원	전화	2151 2154 2157 2160 2156
-----	-------	------------	-----	--	----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국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약 178,706필지		
사업목적	토지 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각종 공부 조회 및 토지 특성 현지 조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터 제12조 까지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해당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8,518	39,512	39,512	0	34,539	-4,973	
국비	38,518	39,512	39,512		34,539	-4,973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1) 조정근거 : 2022년 국고보조금 반납액, 2023년 검증대상필지, 2024년 국고보조금 수요조사
- 2) 필지 수 : 2023년 1.1일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178,70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539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201-01 사무관리비	- 개별공시지가 특근매식비 : 1,000,000원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 32,539,000원	= 33,539	국비 100%
	202-01 국내여비	-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 여비 : 1,000,000원	= 1,000	국비 1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각종 과세자료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이 요구됨.
- 국고보조금 감액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제반 준비	'22. 10. 21. ~ 11. 22.	'22. 6. 7. ~ 6. 27.
토지특성 조사	'22. 11. 23. ~ '23. 1. 19.	6. 28. ~ 7. 21.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3. 1. 20.	23. 7. 24.
지가산정 및 검증	1. 25. ~ 3. 14.	7. 25. ~ 9. 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17. ~ 4. 5.	9. 4. ~ 9. 25.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2. ~ 4. 18.	9. 26. ~ 10. 7.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4. 13. ~ 4. 20.	10. 11. ~ 10. 17.
지가결정·공시	4. 28.	10. 31.
이의신청	4. 28. ~ 5. 29.	10. 31. ~ 11. 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4. ~ 12. 22.
재결정·공시	6. 27.	12. 26.

※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참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3,520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734필)
2022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8,073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493필)
2023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8,706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833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8,518	38,438		80	
2022	38,518	34,543		3,975	
2023	39,512	38,298		1,2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권민성	담당자	시설 7급 박민진 시설 8급 이대웅 시설 9급 홍아라 시설 9급 김민영 실무수습 공지원	전화	2151 2154 2157 2160 2156
-----	-------	------------	-----	--	----	--------------------------------------

도로명 주소사업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도로구간 3,458(종속구간 포함)		
사업목적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4조,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도로명주소 등)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85,257	252,297	252,297	0	256,287	3,990	
국비	28,000	0				0	
도비		0				0	
시비	257,257	252,297	252,297		256,287	3,99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6,287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명 업무 관련 전산소모품구입 = 4,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터 롤용지 : 44,000원×15롤 - 프린터 토너 구입 : 255,000원×3대×5회 위원회 수당 = 2,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정보위원 수당 : 80,000원×12명×2회 - 지명위원 수당 : 80,000원×6명×2회 도로명주소 홍보비 = 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리플릿, 안내지도), 현장홍보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 53,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번호판 10,800원×2,720개=29,376,000원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240,000원×100개=24,00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KAIS 단말기 유지비 : 50,000원×12월 = 600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정보시설 설치(확충)비 = 5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관별 부담금 57,027,000원 = 57,027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308-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기관별 부담금 72,919,000원 = 72,919 		

□ 예산요구 사유

- 국민 생활안전 및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증진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범위 확대 등으로 유지관리 기관별 부담금 증액
- 우편료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요금 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2. : 2024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4. 3. ~ 2024. 10. : 사업 집행(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등)
- 2024. 11. ~ 2024. 12. : 2024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판 확충 - 534개(108,788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건물번호판) - 1,794개(20,836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도로명판, 기초번호판) - 175개(28,047천원) • 도로명주소 홍보 마스크 스트랩 제작 - 5,000개(7,260천원) • 도로명주소 홍보 마스크 제작 - 10,000개(4,950천원) • 상세주소 홍보 리플릿 제작 - 6,600부(880천원) • 사물주소판 설치 - 852개(44,196천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판 확충 - 471개(91,949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 1,813개(20,863천원) • 상세주소 홍보 리플릿 - 7,000부(935천원) • 상세주소 홍보 배너 - 14개(990천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판 확충 - 267개(50,769천원) • 기초번호판 확충 - 152개(12,069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건물번호판) - 1,357개(17,418천원) • 상세주소 홍보 리플릿 - 7,000부(935천원) • 상세주소 홍보 배너 - 17개(1,309천원) •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홍보 물품 제작 - 300개(1,6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91,523	282,977	-	12,003	
2022	285,257	255,974	18,000	11,283	
2023	270,297	215,718	-	54,57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8급 허태강 실무수습 김동휘	전화	2126 2128
-----	-------	------------	-----	----------------------	----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주소정보시설 약 36,900개(건물번호판 외 4종)		
사업목적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주소정보시설 오류에 따른 국민의 위치 찾기 불편 해소 - 안전사고 예상되는 훼손·망실 주소정보시설 사전 예방 조치로 국민 안전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74,205	80,868	80,868	0	51,552	-29,316	
국비		0				0	
도비	12,360	0				0	
시비	61,845	80,868	80,868		51,552	-29,31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552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건물번호판: 30,000개x1,100원	=	33,000
		- 도로명판: 5,100개x2,100원	=	10,710
		- 기초번호판: 1,300개x1,800원	=	2,340
		- 사물주소판: 450개x1,800원	=	810
		- 주소정보안내판: 3개x2,300원	=	6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686,000원	=	4,686

□ 예산요구 사유

- 주소정보시설 DB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시민 생활 편의 제공
- 스마트 KAIS로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격년제(읍·면·동) 실시에 따른 일제조사 수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2024. 3. : 2024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4. 4. ~ 2024. 9. : 사업 집행(용역)
- 2024. 10. ~ 2024. 11. : 2023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42,073개(53,721천원)
2022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45,037개(63,276천원)
2023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47,623개(69,16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67,950	63,276	-	4,674	
2022	74,205	64,933	-	9,272	
2023	80,868	69,164	-	11,70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8급 허태강 실무수습 김동휘	전화	2126 2128
-----	-------	------------	-----	----------------------	----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국가지점번호 60점		
사업목적	- 국가지점번호 표기 오류 및 중복 설치 등 각종 오류 사례 발생에 따라 일제조사 실시로 정확한 위치 찾기 실현하여 국민 안전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640	3,973	3,973	0	4,774	801	
국비		0				0	
도비	1,092	1,192	1,192		1,433	241	
시비	2,548	2,781	2,781		3,341	5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74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1개당 일제조사 비용: 56,000원*25점=1,400,000원(평지) = 1,400 - 1개당 일제조사 비용: 84,000원*35점=2,940,000원(산지·해양) = 2,940 - 부가가치세(10%): 434,000원 = 434 		시도비 (7:3)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2027년까지 100% 조사 완료 목표
- 국가지점번호의 정확한 표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과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국민 안전 보호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예상 수량 증가(전년 대비 14점)에 따른 예산 증액

※ 경기도 토지정보과-22353(2023. 10. 6.), 2024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지원 도비보조금 가내시 알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0. ~ 2023. 11. : 2024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도비보조금 내시
- 2024. 2. ~ 2024. 3. : 2024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4. 4. ~ 2024. 8. : 사업 집행(용역)
- 2024. 9. ~ 2024. 11. : 2024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2022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40점(2,556천원)
2023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46점(3,29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022	3,640	2,556	-	1,084	
2023	3,973	3,295	-	67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8급 허태강 실무수습 김동휘	전화	2126 2128
-----	-------	------------	-----	----------------------	----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3. 1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일원, 양촌읍 유현리 일원 하성면 원산리 일원, 월곶면 고막리 일원
사업규모	4개 지구 713필지 409,918㎡(마송 99필지 32,473㎡/ 유현 178필지 103,065㎡/ 원산 223필지 158,396㎡/ 고막 213필지 115,984㎡)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해당조례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해당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4,200	289,620	289,620	0	34,620	-25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4,200	289,620	289,620		34,620	-25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620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 : 80,000원×7명×3회 = 1,680,000원 ·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 80,000원×6명×3회 = 1,440,000원 · 위원회 자료 및 상황판 제작 : 500,000원×2회 + 250,000원×2회 = 1,500,000원 ·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 15,000,000원 ·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수수료 : 15,000,000원 	= 34,62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관련 비용,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사업 완료 후 지적도가 변경됨에 따른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수수료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임.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수요조사에 대하여 토지정보과-20551(2023. 8. 1.)호에 의거 총 4개 지구 707필지에 대해 시행할 계획임을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제출(총 4개 지구 707필지)

□ 예산증감 사유

- 세계측지계 변환 관련 현장검사 측량이 2023년 완료될 예정으로 2024년 예산 250,000천원 감액
-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대상[2023년: 4개 지구 → 2024년: 3개 지구]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5,000천원 감액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구는 4개 지구로 전년 3개지구 대비 1개지구 증가되어 위원회 자료, 상황판 제작비 1,00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3.11~2024.0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 2024.02~ : 현황측량 실시
- 2024.0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4.04~2024.08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4.08~2024.0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10~2024.11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4.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5.01~2025.0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5.02~ : 조정금 지급·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석정지구』: 대곶면 석정리 일원 754필지 829,059.5㎡ - 사업기간 : 2020. 12. ~ 2023. 2. 16. 『마조지구』: 하성면 마조리 일원 400필지 331,792.4㎡ - 사업기간 : 2020. 5. ~ 2022. 9. 28.
2022	『후평지구』: 하성면 후평리 일원 334필지 154,102.1㎡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용강지구』: 월곶면 용강리 일원 207필지, 152,337.5㎡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2023	『태리지구』: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6필지 100,010㎡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후평2지구』: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92필지 258,084㎡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대명지구』: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72필지 140,311㎡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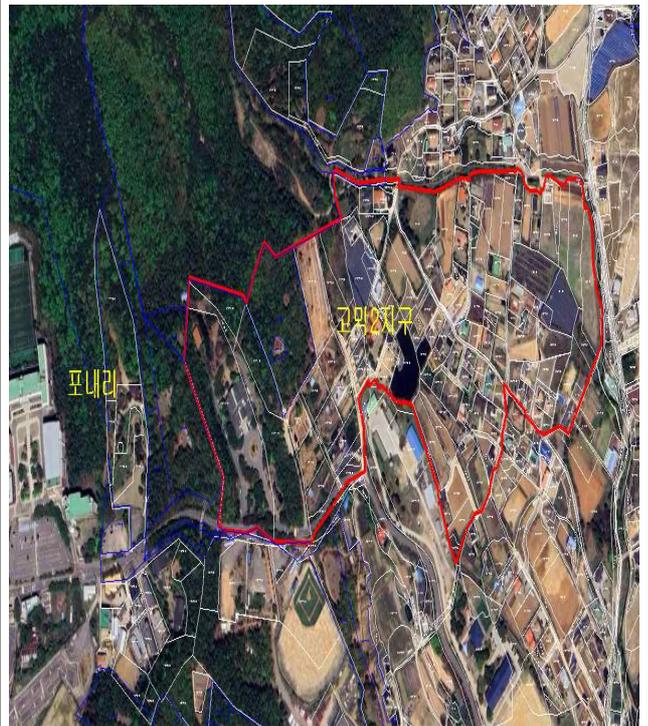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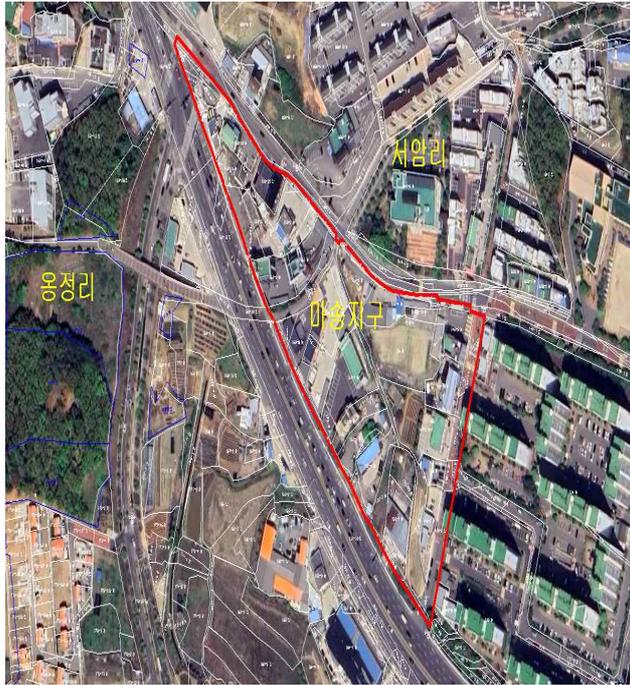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620	1,480	0	3,140	
2022	54,200	50,974	0	3,226	
2023	289,620	178,041	0	111,579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4개 지구 713필지 409,918㎡	본예산 요구액 (천원)	35,620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일원, 양촌읍 유현리 일원 하성면 원산리 일원, 월곶면 고막리 일원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2130
				시설8급 전준규	전화 2129
				시설8급 우제훈	2158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사업기간	2022. 11. ~		사업위치	고촌읍 태리 일원, 하성면 후평리 일원, 대곶면 대명리 일원	
사업규모	3개 지구 600필지 498,405㎡ (태리 136필지 100,010㎡ / 후평 292필지 258,084㎡ / 대명 172필지 140,311㎡)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해당조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해당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950,000	2,200,000	2,200,000	0	2,830,000	6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0,000	2,200,000	2,200,000		2,830,000	6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30,000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01-12 기타보상금	· 태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면적 약 -430㎡): 480,000 · 대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면적 약 -4,650㎡): 1,700,000 · 후평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면적 약 -2,800㎡): 650,000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시점 기준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2,83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은 면적이 감소 된 토지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완료 단계에서 필수적인 예산임.

□ 예산증감 사유

- ‘대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사유 토지 내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면적이 매우 많았으며, 해당 부분을 국 공유화 함에 따라 사유 토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 대상액 증액 예상됨

- '태리지구'는 지가가 높은 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있어 타 지구 대비 조정금이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
- '후평2지구'는 전년 '후평지구' 대비 조정금 지급대상 토지의 비율이 증가하여 조정금액 증액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증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0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2.1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3.01~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및 현황측량 실시
- 2023.05~2022.09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3.07~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2023.09~10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3.10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3.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4.01.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4.02~ : 조정금 지급·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석정지구』: 대곶면 석정리 일원 754필지 829,059.5㎡/ 사업기간 : 2020. 12. ~ 2023. 2. 16. · 『마조지구』: 하성면 마조리 일원 400필지 331,792.4㎡/ 사업기간 : 2020. 5. ~ 2022. 9. 28.
2022	· 『후평지구』: 하성면 후평리 일원 334필지 154,102.1㎡/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 『용강지구』: 월곶면 용강리 일원 207필지, 152,337.5㎡/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2023	· 『태리지구』: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6필지 100,010㎡/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 『후평2지구』: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92필지 258,084㎡/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 『대명지구』: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72필지 140,311㎡/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400,000	124,657	275,000	343	
2022	1,225,000 (950,000+275,000)	830,573	394,427	-	
2023	2,594,427 (2,200,000+394,427)	2,556,769	-	37,658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3개 지구 600필지 498,405㎡	본예산 요구액 (천원)	2,830,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위치	고촌읍 태리 일원, 하성면 후평리 일원, 대곶면 대명리 일원		
현장사진	태리지구				
	후평2지구				
	대명지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전화	2130
				시설8급 전준규		2129
				시설8급 우제훈		2158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350점(설치), 450점(현황조사)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임규정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해당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0,000	50,000	50,000	0	5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50,000	50,000		5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401-01 시설비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 130,000원×350점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10,000원×450점	= 45,500 = 4,5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설치와 관리로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
-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450점 ·2021 지적재조사 석정지구, 마조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 223점 ·지적기준점 설치 : 285점
2022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750점 ·2022 지적재조사 후평지구, 용강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 131점 ·지적기준점 설치 : 88점(설치완료), 138점('22년 하반기 설치 완료 예정)
2023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1,522점(지적삼각보조점 208점, 지적도근점 1,314점) ·2023 지적재조사 태리지구, 후평2지구, 대명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 192점 ·지적기준점 설치 : 2023. 4. 지적기준점 78점 설치 의뢰('23년 하반기 설치 완료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73,238	68,388	-	4,850	
2022	50,000	49,664	-	336	
2023	50,000	37,454	-	12,5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2130
				시설8급 전준규	전화	2129
				시설8급 우제훈		2158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사업기간	2023. 1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일원, 양촌읍 유현리 일원 하성면 원산리 일원, 월곶면 고막리 일원
사업규모	4개 지구 713필지 409,918㎡(마송 99필지 32,473㎡/ 유현 178필지 103,065㎡/ 원산 223필지 158,396㎡/ 고막 213필지 115,984㎡)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해당조례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해당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07,169	123,132	119,504	3,628	146,998	27,494	
국비	107,169	123,132	119,504	3,628	146,998	27,494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6,998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01-01 사무관리비	· 기준점 관측비 : 6,668 · 운영비 : 6,999	= 13,667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일필지 측량비 : 133,331	= 133,331	

□ 예산요구 사유

-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해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 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물량은 4개 지구(713필지)로 2023년 3개지구(598필지) 대비 증가되어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0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3.11~2024.0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 2024.02~ : 현황측량 실시
- 2024.0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4.04~2024.08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4.08~2024.0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10~2024.11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4.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5.01~2025.0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5.02~ : 조정금 지급·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석정지구』: 대곶면 석정리 일원 754필지 829,059.5㎡ - 사업기간 : 2020. 12. ~ 2023. 2. 16. 『마조지구』: 하성면 마조리 일원 400필지 331,792.4㎡ - 사업기간 : 2020. 5. ~ 2022. 9. 28.
2022	『후평지구』: 하성면 후평리 일원 334필지 154,102.1㎡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용강지구』: 월곶면 용강리 일원 207필지, 152,337.5㎡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2023	『태리지구』: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6필지 100,010㎡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후평2지구』: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92필지 258,084㎡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대명지구』: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72필지 140,311㎡ - 사업기간 : 2022.11 ~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62,145 (226,934+35,211)	232,499	26,653	2,993	
2022	133,822 (107,169+26,653)	133,821	-	1	
2023	123,132	123,131	-	1	10.31.기준 집행현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대상지
사업규모	감정평가 200건, 검증 600건		
사업목적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및 거래가격신고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 제10조 제1항, 제5항, 제7항 시행령 - 제10조의 2, 제11조 제7항 제2호 시행규칙 - 제8조 제2항, 제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종료시점지가의 적적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381,460	557,460	381,460	176,000	429,460	4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7,460	381,460	176,000	429,460	4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9,46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 1,000,000원(수수료) × 200(건수) × 2개기관 ※ 대상 사업지별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수수료 상이함.	= 400,000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49,100원(단가) × 600(건)	= 29,46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공시지가 산정 기준)를 산정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종료시점지가 심의를 거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시지가 산정 기준 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한 후, 납부의무자가 거래가격(매입가) 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지가 차익만큼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야 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 예산증감 사유

- 개발부담금 부과 인력을 증원(2명->4명)하여 부과·징수 업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 가격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도(최종예산 557,460천원)와 동일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거래가격신고는 각 개발사업별 사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소금액으로 본예산 편성 요구 후 24년도 상반기 거래가격신고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경예산 요구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총 4회(2024.4월,6월,10월,12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종료시점지가 검증)실시 예정
- '24. 1. ~ '24. 12. 개발부담금 예정부과 이후 납부의무자의 실거래가 신고 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실시(수시)
- ※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및 반영여부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건수 및 금액 변동 발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거래가격신고 113건, 감정평가 의뢰 226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435,650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35,803천원
2022	- 거래가격신고 98건, 감정평가 의뢰 196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343,934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37,481천원
2023	- 거래가격신고 156건, 감정평가 의뢰 312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536,056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20,84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65,350	362,638	-	2,712	
2022	471,678	471,453	-	225	
2023	557,460	556,903	-	55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시설8급 이기욱 시설9급 김규현 시설9급 최장원	전화	2152 2155 2153 2144
-----	-------	-------------	-----	--	----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사업규모	약 259건		
사업목적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게 환수하기 위한 개발비용 재검토 용역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33,100	233,100	233,100	0	233,1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3,100	233,100	0	233,1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3,100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 900,000원×259건	= 233,100	

□ 예산요구 사유

-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토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공사원가를 산출·계산하여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표준 개발비용, 일반 공제비용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사전 검토·적용하고, 공사원가 등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본예산 편성 후 24년도 상반기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경예산 요구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기관 입찰 의뢰 및 단가계약
- 2023.02 ~ 2022.12. :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제출에 따라 재산정 의뢰(수시)
- 2022.03 ~ 2022.12. : 부과대상 건별 개발비용 재산정 비용 적용 후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68건(수행완료) /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
2022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90건(수행완료) /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23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92건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 재산정 용역 전체 292건 중 165건 수행 중, 수행완료 127건에 대하여 기성금 93,40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94,143	193,742	-	401	
2022	233,100	210,146	-	22,954	
2023	233,100	93,406	-	139,6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시설8급 이기욱 시설9급 김규현 시설9급 최창원	전화	2152 2155 2153 2144
-----	-------	-------------	-----	--	----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체납정리위원회 2회, 공매대행수수료 5건		
사업목적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게 환수하고, 징수 및 체납 금액을 원활히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7조 제10조 제19조 제10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를 준용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5,640	14,062	14,062	0	980	-13,08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062	14,062	0	980	-13,08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80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체납정리위원 수당 : 80,000원×3명×2회 · 공매대행수수료 : 100,000원×5건	= 480 = 50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비용 필요(체납정리 위원회 수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수수료)

□ 예산증감 사유

- 우편료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요금 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추진(필요 시)
- 2024.06 : 제1회 개발부담금 체납 결손처분 심의 예정
- 2024.11 : 제2회 개발부담금 체납 결손처분 심의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사무관리비(체납정리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등) : 573천원 - 공공운영비(우편료) : 11,605천원 - 기타반환금등(조기납부환급금 및 김포한강신도시 경기도귀속분 전출금) : 27,223,109천원
2022	- 사무관리비(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수당 등) : 684천원 - 공공운영비(우편료) : 14,105천원 - 기타반환금등(조기납부환급금) : 1,484천원
2023	- 공공운영비(우편료) : 12,08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27,237,281	27,235,288	-	1,993	
2022	17,094	16,273	-	821	
2023	14,062	12,082	-	1,980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시설8급 이기욱 시설9급 김규현 시설9급 최장원	전화	2152 2155 2153 2144
-----	-------	-------------	-----	--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규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09		
사업목적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발생하는 과오납금(이자 포함) 지급을 위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43조의3제2항 제19조의3
	-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0	0	0	2,000,000	2,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2,000,000	2,0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0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305 배상금등	· 개발부담금 과오납금(이자포함)	= 2,000,000	

□ 예산요구 사유

- 인천지법2021구합56309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예상에 따라 추후 김포시 입장 및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과오납금 중 김포시귀속분 과오납금 및 지속하여 발생하는 과오납 이자를 조속히 지급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2. 인천지법2021구합56309 최종 변론 예정
- 2024.01. 인천지법2021구합56309 판결선고 예상
- 2024.02. 개발부담금 과오납금(이자포함)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해당없음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해당없음		-		
2022	해당없음		-		
2023	해당없음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전화	2152
-----	-------	-------------	-----	----------	----	------

반환금 기타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 대상지
사업규모	약 12건(환급 신청 예상 건수)		
사업목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1,500	2,400	2,400	0	5,115	2,71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	2,400	0	5,115	2,71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15	
반환금 기타	802 반환금기타	· 개발부담금 환급금 : 150,000,000원 × 3.41%	= 5,115	

□ 예산요구 사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 및 납부의지를 고취를 위한 조기 납부 일부 환급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조기납부 환급금의 연 이자율 변동(1.2%→3.41%) 고시(국토교통부)에 따라 조기납부 일부 환급금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12.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대상자 발생 시 환급 지급(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2022	-
2023	- 개발부담금 환급금 지급 : 38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2022			-		
2023	2,400	386	-	2,0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시설8급 이기욱 시설9급 김규현 시설9급 최장원	전화	2152 2155 2153 2144
-----	-------	-------------	-----	--	----	------------------------------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종합허가과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1,182건		
사업목적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으로 건축물 허가 시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추진에 따른 주민알림 사전예고 현수막 게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법	제27조 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건축기본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63,000	263,000	263,000	0	208,320	-54,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3,000	263,000	263,000		208,320	-54,6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8,320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 173,600원*1,182건	= 205,320	
		· 건축법 관련 도서 구입 : 40,000원*25권	= 1,000	
		· 현수막 및 게시틀 제작 : 20,000원*100개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건축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안전성을 강조하여 내실 있는 건축문화 정착
-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 운영지침에 근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예고문 제작필요
- 예고문 현수막(A1크기) 및 설치용 게시틀 제작(연간 100건 사전예고)

□ 예산증감 사유

○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금리인상 등)으로 건축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대행건수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수수료 지급(1분기)
- 2024.06 : 수수료 지급(2분기)
- 2024.08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현수막 구입
- 2024.09 : 수수료 지급(3분기)
- 2024.12 : 수수료 지급(4분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1,231건
2022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948건
2023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514건 (10. 31.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303,000	272,473	-	30,527	
2022	263,000	195,350	-	67,650	
2023	263,000	111,170	-	151,8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종합허가과	건축허가1팀장 정안철	담당자	시설7급 유진호	전화	5852
-----	-------	-------------	-----	----------	----	------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 정수기 임차료 및 음료수 구입 등		
사업목적	- 복합인허가 민원 신청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최종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본예산요구액 (D)	2023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0	5,000	5,000	0	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5,000	5,000		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 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차료 : 750,000원*2대	= 1,500	
		· 민원인 음료 구입 : 3,500,000원	= 3,500	

□ 예산요구 사유

- 인허가 민원실 사무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 증대
- 민원 편의 제공으로 시민의 인허가 편의성 극대화

□ 예산증감 사유

- 종합허가과 신설 이후 복합인허가 처리에 대한 질의 및 방문 민원인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임차료 지급
- 2024. 01 ~ 12 : 민원실 음료수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3.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해당없음
2022	- 새울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476건 - 세움터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2,098건
2023	- 새울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4,993건 (10. 31.기준) - 세움터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8,451건 (10. 31.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	-	-	-	-
2022	-	-	-	-	-
2023	5,000	4,880	-	1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장은길	담당자	행정6급 최규현	전화	5832
-----	-------	------------	-----	----------	----	------